2021년 남동구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1.4.19.부터 4.30.까지 10일간 3개반 18명이 참여하여 2017년 6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남동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98건(본처분 59건, 현지처분 3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 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굴한 **수범사례 20**건은 대 내·외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구분	처분현황(건)			처 분 요 구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추징 환수	환급 감액
계	107	68	39	107	58	36	13	12/ 482,772	11/ 482,642	1/130

2021년 남동구 종합감사 결과

[지 적 사 항]

제 목 농지이용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농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외에는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의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10조, 제11조, 제62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기준을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0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전년 9월 1일부터 당년 8월 30일(1년간)까지의 농지이용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의 목록은 토지대장전산정보자료 및 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자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불법 임대·사용대 등 투기 목적의취득농지 실태 파악을 위해 농지원부 및 직불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중점 조사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타 시·군 및 타 시·도 거주자 명의의 소유농지는 전부 실태조사 목록에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중점조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각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농지원부에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 통지, 처분명령, 법 제6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를 익년 4월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농지이용실태 조사인력을 감안하고 향후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농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대상 농지를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누락하였다.

아울러, 매년 수립된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등이 없어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농지업무 수행과정에서 조사된 휴경농지, 불법전용농지 등이 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원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농지이용실태 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농지법」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0호)을 준수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농지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조사결과 보고, 처분대상 농지 결정 및 처분, 농지원부 정비 반영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불법전용 농지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과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농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법제4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또한, 법 제57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전용 농지를 적발하게 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4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하거나 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를 고발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에 따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인정될 경우 농지를 처분토록 하여야 한다.

남동구에서는 2017.6월부터 2021.3월까지 불법전용 농지 000건을 적발하여 법제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00건은 원상회복 완료하였고,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 0건에 대해 고발조치 하였으나, 감사일현재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00건은 고발 및 농지처분의무통지 등의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적발 이후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고발, 농지처분의무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시행령 제59조제1항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법 제5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58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40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전용 허가, 신고,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신고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농지가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 관리하여야 하며. 규정 제22조의2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는 날에 해당 사업명,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 7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아 농지전용 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2021.4.21. 현장 조사한 결과 20**.*.**. 콩나물재배사 설치 목적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인천 남동구 △△동 000-*번지'는 현재 물품보관 및 유통 창고로 사용 중이며, 20**.*.**. 콩나물재배사 설치 목적으로 허가받은 '▽▽동 000-*번지'는 현재 콩나물재배사 운영을 중단하여 일반 창고로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2017.6월~2021.3월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 농지전용 허가 건에 대하여구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아 농지전용 된 토지가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하시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 농지전용 허가(협의) 건에 대해서는 구 누리집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축산물 영업장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1. 축산물 위생검사 및 지도·점검 소홀

남동구 ○○과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의 영업에 대해 같은 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및 제24조(영업의 신고)를 받은 축산물 영업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시행규칙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에 의하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 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여야 한다.

남동구 ○○과에서는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지속적인 위생검사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대상업소 000개소 중 00개소에 대해 미점검 하였으며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가공판매업 영업장에 대하여는

점검비율이 19.7%에 그치는 등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관리 소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제2항에서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동구 ○○과에서는「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의2(위생교육대상자)에 대해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생교육 관리와 과태료 부과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주의]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검사 대상업소에 대한 검사와 지도·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교육 관리와 과태료 부과 등을 소홀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축산물 표시사항 위반(허위표시) 고발 미조치에 관한 사항

기 과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남동구 ○○과에서는 20**년 *월 **일 관내 식육판매업소 1개소에 대해「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별표13] 3호가목에 의한 축산물 표시사항 위반(허위표시)사항에 대해 적발하고「축산물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8조(과징금 처분)에 따른 과징금 처분과「축산물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 등)에 따른 축산물 위생교육 재실시를 처분하였다.

상기 위반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45조(벌칙)제4항제1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에 해당한다.

남동구 ○○과에서는 상기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벌칙조항도 적용하여 고발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영업장의 위반사항 행정처분 시 벌칙 조항에 따르는 고발 조치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어업용 기자재 지원사업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업·임업·익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란" 별표6(아래 일부 발췌)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 24. 젓갈용 숙성용기(플라스틱 및 철재 재질만 해당한다.)

특례규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는 ①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③「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제외한다.) ④ 어업 주업법인(상기 1~3번의 어민 및 당해 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이 2/3 이상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어업용 기자재 시비보조금 사업 시행 완료 후 특례규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환급받지 않는 등 지방보조금 정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시정] ① 특례규정 제9조에 따라 환급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후, 시비보조금 000원을 보조금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②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낚시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과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18조(등록의 유효기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의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낚시터업 등록을 받은 자에게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는 제53조(벌칙)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낚시터업 등록을 처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낚시터업자에게 등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통지 의무가 있고, 낚시터업 등록을 연장해서 이용하려는 낚시터업자는 같은 법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영업을 영위해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낚시터업 등록을 받은 자에게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만료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나 약 5개월이 경과한 후 사전통지를 하는 등 낚시터업 등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낚시터업 등록을 받은 자에게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만료에 대한 사전 통보를 적기에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 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와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제5조의 '원산지 표시' 위반(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자) 또는 제6조의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게 되어있다.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제3조(교육이수명령)제1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에게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서를 등기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제2항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군·구 등의 누리집에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원산지교육 이수명령' 및 '누리집 공표'를 하지 않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명령' 및 '누리집 공표'를 하시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선 요구

제 목 ㄱ 시장 피사용·수익허가자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재산을 같은 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행정기관(사용·수익허가자)은 같은 조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피사용·수익허가자'라 한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전대(차)]할 수 없도록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2020년 12월 ㄱ 시장에 대하여 기부채납으로 장기간(20년)의 사용수익허가에도 피사용·수익허가자에게 이를 주지시킬 별도의 교육이나 안내 등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어 허가 기간 만료 이후 행정재산 사용종료 등에 대해 피사용·수익허가자에게 인식시켜야 함에도 허가조건에는 원상태로의 반환만 명시하고 별도의 안내 및 지도가 없어 향후 분쟁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재산을 같은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한 경우, 허가권자(남동구)는 허가 취소 및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후 사용에 대한 권리가 종료됨을 연 1회 이상 교육 및 안내 등을 통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일반직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4조(교육훈련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실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의 기준에 따라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인정하되, 다만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일교육을 이수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부서는 분기별 점검을 시행하야 하며 점검결과 교육훈련 실적을 오류 입력하였거나 또는 부정하게 입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2017. 6월부터 감사기간 중 직렬·직급별 000명의 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해 총 00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수 및 승인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 중 000명이 000건의 동일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중복 기재함으로써 000시간의 교육실적이 중복승인 되었으나 남동구는 감사일 현재까지 적정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없이 소속 공무원의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관리에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중복 및 오류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을 정정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외 2개부서

내 용

1. 시험위원 구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각 호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XI.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의 시험위원 구성요건에 따라 해당 직무 분야 전문가 등1)을 1인 이상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되, 이 중 2/3 이상은 외부 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XI.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의 시험 위원 회피·기피 기준 및「남동구 인사 규칙」제13조(시험위원) 제4항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응시자에게는 기피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〇〇과는 20**년「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2호의 시간 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의 ㄱ과 ㄴ 채용 시 응시자의 현재 근무부서 부서장, 출신

^{1)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XI.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 다. 시험위원의 구성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1.} 해당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2.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3.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대학교 전공학과 교수 등 응시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면접위원으로 부당하게 위촉하였다.

2. 경력경쟁임용 응시 자격기준 제한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제4항에 의하면 경력경쟁으로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동구 인사 규칙」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별표7] 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디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남동구 〇〇과는 "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다급)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직무 분야 응시자격에 대하여 인사규칙의 기준보다 부당하게 상향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채용의뢰를 하였고 〇〇과는 〇〇과에서 의뢰한 요건대로 임용시험 공고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ㅁ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과는 ㄹ 다급과 라급 각 1명씩을 채용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남동구 인사규칙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한 결과 직급별 각 4명씩 응시하였다.

이에 따라 ○○과는 3명의 내부 시험위원을 선정,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나, 20**.*.**.일자 면접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전원은 점수미달로 탈락하였다.

이후 ○○과는 동일 채용직급에 대한 재공고 계획을 수립하면서「남동구 인사 규칙」을 위반하여 응시대상을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고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과도하게 상향하는 등 20**년 제*회 임용시보다 더욱 부당하게 응시요건을 제한하여 ○○과에 채용의뢰를 하였고, ○○과는 ○○과에서 의뢰한 응시요건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20**. **월 직급별 최종 합격자를 임용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응시를 희망하는 다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응시자 경력평가 부적정

남동구 ○○과는 '남동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1명을 채용하기 위해 "ㅂ 임기제공무원 라급 채용계획"을 수립하고,『ᄉ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공고를 통해 3명이 응시하였다.

그러나, 응시자의 주요경력이 공고문에 명시한 공공기관 실무경력(중앙부처, 광역 또는 지자체의 실무경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서류심사 시 이들을 모두 합격시켰으며 면접시험에서 1명이 최종 합격 임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직원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외 11개 부서

내 용

1. 개인정보 수집 및 면접 평가항목 부적정

2019.4.16.일자 신설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²⁾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제3항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이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6종3)의 구비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이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17.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남동구 각 부서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9. 4월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한 ○○과 주관 ㄱ 채용 등 00건의 경우 응시원서에 응시자의 사진 부착과 학력(중·고·대학교명

²⁾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의 각 호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³⁾ 제10조(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제3항의 각 호

^{1.} 이력서 1부, 2.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열람·확인 동의서 1부, 3. 기본증명서 2부, 4. 경령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5. 신원진술서 2부(공무직근로자로 한정함), 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평가에 편견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20**년 ○○과 주관 ㄴ 등 0건의 채용 시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징구하였으며, 특히 20**년 ㄷ 등 00건의 채용 면접 심사표에는 외모에 대한 평가항목을 타 평가항목과 동일한 비중으로 배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였다.

2. 서류싞사 처리 부적정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남동구 ○○과에서는 "ㄷ 전담인력 채용" 응시자 0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였으나 각 응시자의 서류심사 기준표를 확인한 결과, 서류심사 기준표의 각 항목별점수는 워드프로세서로 일괄 작성·집계되어 있고 각 심사위원의 날인은 0명의 심사표에모두 누락되어 있어 해당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주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 하시고 응시원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의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전파하는 등 공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취득세(건축물, 시설물)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취득세(건축물) 부과에 관한 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 의하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용 건축물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 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서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지방세법」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동 ***-*번지가 남동산업단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산업단지에 속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상 상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구전시판매장으로 사용될 건축물을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착오 감면하여 취득세 0건, 000원(가산세포함)을 과세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취득세(시설물) 부과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제6조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서는 급수·배수시설이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한다.

「지하수법」제7조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7조의3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지하수(생활용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아 급배수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2018년~2020년도 건축물(시설물) 취득세 00건, 000원을 과세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취득세 000천 원을 조속히 부과· 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주민세(재산분)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주민세 "재산분"은 舊「지방세법」제80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 1.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써「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소 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7. 31.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지방세법」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남동구청 ○○과에서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A교통(주) 등 00개 사업장에 대한 2017년 ~ 2020년 주민세 재산분 00건, 000원을 과세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주민세 000천 원을 조속히 부과· 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재산세(토지분, 도시지역분)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재산세(토지분) 부과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6개월이 지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 지역,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에도 일반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과세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에 의하면 전·답·과수원 (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 건축 미착공 토지, 농지 미사용 토지 등이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임에도 별도합산 이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2016년~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00건, 000원을 과세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7조에 의하면「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로 한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준공업지역인 ▲▲동 ***-*번지가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음에도 2017년~2020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0건, 000원을 과세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재산세 0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4)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연면적 × 단위부담금(m²당) × 교통유발계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시설물 연면적은 층별 바닥면적의 합으로 함
- 단위부담금(m²당)은 층별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50원을,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100원을, 3만 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1,600원을 적용함
- 교통유발계수는 최저 0.47(공장시설)부터 최고 9.00(대형마트) 까지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부과함

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 제적 부담을 말하며,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또한,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교통유발량 (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매년 관내 시설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시설물의 용도에 맞는 교통유발계수를 차등 적용하는 등 위 산정기준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00건, 000원을 부과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시정] 상기와 같이 부과 누락된 교통유발부담금 총 000천원에 대하여 즉시 추징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대장 등을 활용한 시설물 공부·현장 조사와 전산 자료입력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이해와 궁금사항 해소 등 납부자와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업체 직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이해 교육을 안내문 또는 온라인 등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국가지정문화재 수리에 관한 사항

기 과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문화관광과)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수동은행나무 등 8개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2020년 '논현포대 보수공사'등 총 4건의 문화재 수리 공사를 발주하였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5)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46조(시정명령 등)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시사 또는 시장·

^{5) 「}문화재수리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2(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 변경을 한 경우

^{2.} 문화재수리업자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

^{2.} 문화재수리업자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실측설계도면 또는 준공도면의 작성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실시한 연구 또는 조사결과를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법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동구에서는 문화재수리 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제출받은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수리대상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문화재수리업자 등록관청(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6)에 행정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감사일까지 20**년, 20**년 발주한 0건의 문화재수리 공사에 대해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도급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0**년 ◎◇ 보수공사 등 0개 공사의 경우 감사기간 중 도급자로부터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아 인천시에 제출하였고, 20**년 ○ ▲ 보수공사의 경우 도급자로 부터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제출받은 당시 접수를 하지 않아 접수일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20**.*.**. 인천시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0건의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비 000천원이 선 지급되었음에도 장기간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시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문화재 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여자육상" 종목을 남동구청 운동경기부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4조(보상금)에 따르면 감독·코치 및 선수가 [별표7]에서 정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의 지급기준에 따라 입상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감독·코치 및 선수에게는 각종 대회에 출전한 연간 입상성적을 종합하여 성과금을 지급하며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선수별로 [별표7] 기준에 의하여 성과금 지급 점수를 산정하되 감독·코치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해당부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지급점수로 하고 규칙 제8조에 따라 면직된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성과금 지급점수에서 10%를 감할 수 있다.

아울러 성과금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성적이 있는 성과금 지급점수 80점 이상 획득자에게 지급하며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에 따라 남동구에서는 '여자육상부'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 한해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성과금은 전국체육대회 입상성적이 있는 성과금 지급 점수 80점 이상 획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2017년~2020년 여자육상부에게 입상보상금 및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1*년 전국체육대회 입상성적이 없어 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닌 선수 기에게 성과금 000천원을 지급하였고, ㄴ 선수는 '1*년 제**회 전국A대회 400M계주 3위 입상 기록이 없음에도 입상보상금 00천원과 성과금 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년 ㄷ 등 0명에게는 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규모대회7)가 아닌 대회에 입상한 실적에 대해 입상보상금을 지급하여 총 000천원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였다.

아울러, 전국규모대회인 '1*년 제**회 전국A대회 400m 계주에서 3위로 입상한 기록이 있는 ㄹ 선수에게는 입상보상금 00천원과 그에 따른 성과금 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도 있다.

- [시정] ① 20**년~20**년 과다지급된 입상보상금 및 성과급 000천원을 환수하고, 미지급된 000천원을 추가 지급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등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⁷⁾ 전국규모대회 : ①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②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③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④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⑤ KBS배전국육상경기대회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노래연습장업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법령 위반 노래연습장업자 행정처분 부적정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경찰서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법령 위반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해「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안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의 고용·알선 및 호객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27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영업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노래 연습장업자가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업무 매뉴얼(2017.6월)에 따라 동일 위반 행위의 행정처분 차수는 "적발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남동구에서는 법령 위반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때에는 그 적발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 차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20**.*.*. 주류 판매·제공으로 적발된 A노래연습장의 경우적발된 날 이전의 최근 1년 기간 중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1차 위반으로 판단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하였고,

20**.**. 주류 판매·제공으로 적발된 B노래연습장 역시 적발된 날 이전 최근 1년 기간 중에 동일한 위반 행위로 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3차 위반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90일을 처분하여야 하나 1차 위반 시 적용되는 10일의 영업정지를 처분한 사실이 있다.

2.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관리 부적정

법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노래연습장업자가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0.2.18. 개정, 2021.1.1. 시행)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근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과태료)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을 위반 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 기준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남동구에서는 (사)인천광역시△△ 남동구지부와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 2017년~ 2020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추진하였다.

남동구와 (사)인천광역시△△ 남동구지부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위탁자인 남동구청장은 교재제작비, 강사료, 장소 사용료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인 (사)인천광역시△△ 지부장에게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수탁자는 매 교육 실시 30일 이내에 교육비용을 정산·통보하고 위탁교육에 따른 제반업무를 교육통지 현황과 교육참석 현황을 증빙하는 자료 일체를 포함하여 매 교육실시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탁 사업비는 위탁금 교부조건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사업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수탁자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기타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협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시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5조(지도·점검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지도·점검을 하여야 하고, 지도·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동구에서는 수탁자로부터 매 교육 실시 30일 이내에 교육통지 현황, 교육참석 현황을 증빙하는 자료 일체를 포함하여 노래연습장업자 위탁교육에 따른 제반업무 및 교육비용을 정산·보고 받아야 하고 위탁사업비가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시에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통해 위탁 사무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하거나 부당 하게 처리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할 뿐 아니라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참석 현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20**\sim20**년까지 위탁사무에 대해 정산검사를 전혀실시하지 않았고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수탁자가위탁사무 및 정산 보고를 연말에 일괄 보고하는 등 협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시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년 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있었다.$

금번 감사기간 중 수탁자가 제출한 교육비 정산 등에 관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교육교재 등 인쇄비에 대해서는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간이영수증, 견적서를 첨부하였고 교육강사비의 경우 강사 이력서 등 강사위촉 관련 서류가 전혀 없음에도 강사비를 지급하고 지출증빙으로 영수증만을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해서도 수탁자가 교육참석자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교육참석부를 첨부·제출하지 않아 참석대상자의 교육 참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감사기간 중 남동구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참석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참석 여부가 불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의무대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남동구에서는 수탁자가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하여야 함에도 수탁자가 제출한 교육참석 관련 서류에는 신규 등록 노래연습장업자의교육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교육 참석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등 노래연습장업자 법정 의무교육에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행정처분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등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신고 체육시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체육시설업자 보험가입 확인 업무 소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보험가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보험가입)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1)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이내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책임보험금 등)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시정명령), 제32조(등록취소 등) 및 제40조(과태료)에 따르면 시·도시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행정처분)에 따라 3일의 영업정지²⁾를 명할 수 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¹⁾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

²⁾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차:영업정지 3일 / 2차:영업정지 10일 / 3차:영업정지 20일 / 4차:영업정지 1개월

이에 따라 남동구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가입대상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제출하게 하고, 체육시설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3)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지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후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감사일까지 보험가입대상 체육시설업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보험가입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신고·등록된 남동구 보험가입대상 체육시설업 0개소의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는 없었으나 ◎◎공원 및 ◇◇수영장의 보험 보장 한도금액이 1억원(1인)으로 관련법에 따른 1억5천만원(1인)에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법령 위반 체육시설업자 행정처분 미실시

법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등을 하여 서는 아니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0조(시정명령)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행정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행정처 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27조(행정처분) [별표7] 행정처분기준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3) 1}인당 보장 한도액 : 사망 1억5천만원 / 부상 3천만원 / 후유장애 1억5천만원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동구에서는 경찰서 등으로부터 체육시설업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통보된 경우 행정처분 기록대장을 확인 후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경찰서로부터 20**.*.**. 준수사항 위반(사행행위 조장)으로 적발되어 통보된 ▽▽당구장에 대해 20**.*.*. 위반행위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행결과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20**.*.**. 동일행위 (사행행위 조장)로 재차 적발·통보되어 그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시정] 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ㄱ 축제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축제운영) 및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4조(대행사업 및 비용부담)에 따라 20**년, 20**년 ㄱ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남동구 A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다.

1. 민간위탁 부적정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 따르면「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거 남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설립·운영)에 따른 지방공단이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제5조(출자·출연기관의 지정·고시 등)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부담경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세출예산 성질별분류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의 예산편성을 금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동구에서 축제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남동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적격 심의를 거쳐「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남동구 A공단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했어야 한다.

남동구 A공단은「지방공기업법」제76조(설립·운영)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적용범위)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법 제2조의 사업 범위1) 안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법제처 2018.11.26. 회신 18-0421 해석례 참조)

설립 후 기존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이란 사업 수행을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의미)에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설립 시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남동구 A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에는 남동구 A공단은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례 제23조(목적사업)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등 17개 사업²⁾을 열거하고 있다.

¹⁾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등 8개 사업과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4개 사업으로서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이는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동구에서 「남동구 A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라 축제를 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 시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단의 설립목적에 타당한 사업일 경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3)로 편성하여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전문기관의 타탕성 검토 없이 '20**년 ㄱ 축제 위탁방안 검토 보고'에 따라「남동구 A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4조를 준용하여 20**년부터 축제를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하여 지방공기업인 남동구 A공단에 위탁하였고,

축제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목적사업에 '¬ 축제'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음에도 20**년, 20**년 축제 역시 타당성 검토 및 조례 개정 없이 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한 사실이 있다.

2.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 소홀

남동구와 남동구 A공단이 체결한 위탁협약서 제15조(사업비 관리 등) 및 사업비교부조건에 따르면 남동구 A공단은 남동구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자체 회계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교부받은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비 집행과정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되 사업비집행 내역은 사업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단 자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등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²⁾ ①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② 청사시설 관리·운영사업 ③ 쓰레기봉투 대행판매사업 ④ 해수공급시설 관리·운영 사업 ⑤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⑥ 공원등 유지관리사업 ⑦ 청년미디어타워 관리·운영사업 ⑧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사업 ⑨ 남동소래아트홀 관리·운영사업 ⑩ 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사업 ⑪ 남동구 평생학습관 건물 위탁관리 ⑫ 구립도서관 관리·운영사업 ⑫ 소래역사관 관리·운영사업 ⑬ 임대주택 관리·운영사업 ⑭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사업 ⑮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⑯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⑰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³⁾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를 말함.

^{- 2021}년 예산과목 개정 : '308-10 → 308-11'

또한, 예산은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되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않아야 하고 각 세부사업의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당해 순수 사업비의 용도로만 편성하여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종료 후 4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내역, 통장 입출금내역, 영수증,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 원본 및 회계장부를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는 세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가. 사업비 예산계획서 작성 부적정

「남동구A공단 회계규정」제153조(예산안의 편성)에 따르면 이사장은 구청장이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148조(예산의 내용)에 따라 예산은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작성·통보한「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공단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수입은 직접관리비용, 간접관리비용 및 대상 시설물의 감가상각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계산하여 대행사업수입에 계상하고지출은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 해소'에 따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남동구 A공단에서는 남동구로부터 축제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서 및「남동구A공단 회계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한 예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했어야 한다.

또한,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A공단이 제출한 예산계획서가 협약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 후 사업비를 승인·교부하고 사업비가 예산계획서 및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남동구 A공단에서는 소래포구 축제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A공단이 제출한 예산계획서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시정·보완 없이 이를 승인·교부하였다.

나. 사업비(식비) 집행·정산 소홀

행정안전부「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써 ①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②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③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불가하며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하다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행사운영비중 식비는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써 단가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1식 8,000원)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동구 A공단에서도 행사운영경비 중 '식비'를 현장직원, 유관단체, 공무원의 식비로 승인·교부받았다.

따라서, 남동구 A공단에서는 '식비'를 축제기간 중 축제지원을 위해 참여한 직원 등에 한해 특근매식비 단가 내에서 집행했어야 했고, 축제 전·후 축제업무를 담당한 남동구 A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등 불가피하게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근매식비 성격으로 집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A공단에서는 20**년, 20**년 ㄱ 축제에 따른 '식비'를 집행함에 있어 'ㄱ축제 노고직원 격려 석식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간담회성 경비로 집행하였을 뿐 아니라 20**년에는 대행용역사와의 내부 회의 시 음료구입비를 식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남동구에서는 20**년, 20**년 ㄱ 축제 지원을 위해 행사인력을 지원하고 1식 8,000원 범위 내에 식권을 배부하였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20**년, 20**년 식권 배부대장을 확인한 결과, 임무부여에 따른 부서별·기관별로 식권을 배부하여야 함에도 참여자 개인별로 각각 배부하여 배부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축제지원 참여자가 아닌 여성합창단, 풍물단, 노인복지관 직원 등에 배부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 결과 20**년의 경우 축제지원 참여자가 1일 195명 총 585명임에도 식권은 총 000매 000원이 집행되었고, 20**년에는 1일 144명 총 432명이 축제지원을 위해 참여하였음에도 식권 000매 000원이 집행되어 축제지원 참여자 대비 식비가 과도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남동구 A공단에서는 식당으로부터 회수한 식권과 매식대장을 정확히 확인후 식비 집행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식당별, 단가별로 집행서류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집행품의서에 내역을 '총금액×1식'으로 작성하였고, 회수식권 및 매식대장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남동구에서는 사업비(식비) 집행에 있어 위와 같은 부당한 사항이 확인 되었음에도 자료 보완,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사업비 정산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외 2개 부서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종사자 근무환경 및 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인권보호,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1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모두 만족하는 경우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시설장의 친인척,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 자 등을 위원으로 임명·위촉 하지 않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 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시설 이용·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 하는 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위원수를 미 충족하는 등 구성기준과 다르게 위촉하였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아 부적정 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20**\sim20**년$ 시설 지도·점검 시, 일부 시설에만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 [시정] ① 사회복지시설 00개소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위원을 임명·위촉하시기 바라며.
 - ② 아울러, 운영위원회가 정기(분기별), 수시로 원활히 운영되도록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관리 소홀

「의료급여법」제23조 제1항,「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되, 7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고,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5항에 따라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으며, 제6항을 근거로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구청장은 「의료급여법」제23조 제7항을 근거로 재산조회, 압류, 매각, 청산, 결손처분 등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고, 만일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나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00명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징수관리를 하면서 총 부당이득금 000원 중 000원을 징수, 징수율이 **%에 그치고 있으며, 00명 중

00명은 납부통지일로부터 00일~000일(21.2.20 기준)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부과 금액 000원 중 징수된 금액이 전혀 없다.

또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ㄱ 등 00명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하지 않았으며,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 처분 절차이행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의례적으로 독촉장만 발부하고 있는 등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사후점검 등 관리 소홀

「의료급여법」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제6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 청구를 받은 구청장은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기금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대상자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에 가구방문을 실시(단, 2017년까지 3개월 경과시점 1회에 한해 점검 실시)하여 당해 보조기기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후점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보조기기 지급 후 본인에게 맞지 않거나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대상자가 보조기기를 반납하고자 할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반납의사확인서를 받고, 지원금액을 반납 받은 후 행복e음상 반납기록을 입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청 〇〇과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후 1·2차 모두 기준일을 초과하여 사후점검을 하거나, 감사자료 제출 요구 시점인 2021. 2월에 긴급하게 추가로 점검(지급일로부터 최장 000일 경과 후 점검)을 하였으며, 52건 중 0건은 한 차례도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보조기기 지원대상자 ㄴ의 경우, 20**.*.**. 전동 휠체어 구입에 따른 비용 000천원을 지급한 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인 20**. *월에 1차 사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 *월 대상자가 개인사유로 보조기기 및 구입비용 전액을 보조

기기 판매업체에 반납한 사실이 반납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확인되었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민원인의 반납의사 확인서 미 징구, 판매업체로부터의구입비용 반납이 이뤄지지 않는 등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소홀히하였다.

- [시정] ① 정해진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 00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장애인보조기기 사후점검 미실시 건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조속히 실시하시기 바라며, 20**.*.**.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후 개인사유로 기기 및 구입비용을 업체 측에 반납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반납의사 확인서'를 징구하시고, 판매업체 측으로부터는 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아울러, 장애인보조기기 사후점검의 목적이 지원취지에 맞게 기기가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숙지하시어 사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민법상 후견인 지정이 어렵거나, 후견인 지정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급여관리자는 부양의무자(자부, 사위, 계부모 포함),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만일 부양의무자 등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당한 급여사용 우려 등으로 급여관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며, 지정 시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를 작성하고, 부당 사용·관리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급여관리자가 급여관리 사실 및 책임을 인지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동장은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복지급여가 이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급여관리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되, 급여관리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나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직계비속 포함),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의 착취·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한 모두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동장은 급여 사용 실태 점검 시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의사무능력(미약)

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상의 공통점검항목(통장소유자, 인출형태, 지출내역 및 영수증 일치여부, 주요 사용처, 타인사용 입출금 내역, 수급자를 위한 정기적금, 펀드, 보험가입여부)을 중심으로 급여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병원·시설 수급자의 경우, 병원 간식비 사용에 대한 미납금유무 등 별도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수급자 및 급여관리자의 인적사항, 세부항목별 점검사항, 조사일, 조사자(업무 담당자), 확인자(동장)의 서명날인이 된점검표를 기록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사항 확인 결과, 반기별로 급여관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의사무능력(미약)자 00명에 대하여는 1~2년간 년 1회 점검에 그쳤으며, 분기별 점검표상 항목별 점검사항 및 최종 점검결과 내용에 변동 없이 체크된 점검표가 조사일, 조사자(담당자), 확인자(동장) 날인이 일부 혹은 전부 누락되는 등 점검에 대한 조사자 및 확인자의 기록관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상자별·분기별 통장 입출금내역에 따른 증빙자료 확인 결과 통장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하고, 급여관리자 혹은 제3자에게 입금된 사항이 통장거래내역이 일부 기록되었음에도 사용자, 사용내용 등 사실에 대한 확인, 시정 조치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대상자 ㄱ의 경우 급여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는 2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수익자가 급여관리자로 계약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 조치 사항이 없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시정] ①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대하여 반기별로 점검토록 하고, 부적정 관리현황을 시정 조치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특히,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통장 세부 사용내역을 전면 재점검하시고, 급여관리자 또는 제3자에 의해 타목적으로 부당하게 인출·사용한 건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반환토록 하며,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등 법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아울러, 수급자 급여를 부당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민·형사 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고지하고, 향후 급여관리 점검 소홀 등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조건제시유예자 선정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고,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단기간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조건제시유예자로 적용하도록「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제시유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2월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인 자, 외국인 수급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사람, 시험준비생, 실업급여 수급자, 20세 이상 초·중·고 재학생, 초·중·고·대학교휴학생,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이나, 기타 여건을고려할 때 현재의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검정고시 준비 등의 불가피한사유로 조건제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이에 해당되며, 「자활사업 안내」에서 각 대상자별 세부기준 및 제출(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구청장은지침을 근거로 이에 대한 확인·조사결과를 통해 조건제시유예를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로 결정하는 자, 그 첫 번째는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의심되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로,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 단기적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1회 최대 3개월, 연2회 까지 제시유예자로 선정 가능하나,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하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치료(예상)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세 번째는 계절적으로 질병악화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상자는 진단서가 아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고, 위 세가지 기준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서는 각각의 증빙서류와 함께 사실확인조사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있다.

한편, 조건제시유예자 중 시험준비생은 만 20세 미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생 및 만 20세 미만의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시험 응시생이 해당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대상자는 시험 응시원서 및 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영수증, 학원수강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등과 함께 사실확인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자활사업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00명을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함에 있어,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명확히 확인 조사된 자에 한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단기간 유보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치료(예상)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대상자선정 조사시점의 진단결과가 아닌, 과거의 진단이력이 기재된 진단서를 재발급하여 제출한 자, 시험 준비생임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원서, 학원수강증 등 객관적 증빙서류 및 사실확인조사서 제출 없이 교재표지사진 제출 등 관련 자료가 미비한 대상자를 질병·부상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자, 시험준비생 자격의 제시유예자로 결정통보 하는 등 조건제시유예자 선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주의] ① 조건제시유예 기준 조사시점에 진단·확인됨을 증빙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제출서류 및 사실확인조사서를 토대로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해 조건제시유예자가 선정되도록 [자활사업 안내] 지침을 숙지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제9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라 구청장은 등록 장애인의 장애 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재판정기한 3개월 전에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를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정기한 1개월 전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통지를 하며, 촉구기한 내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에 따라 청문 시작 10일 전 처분사전통지를 하되,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의 재판정 유예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즉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거주불명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동장이 이를 인정하여 재판정 유예를 할 수 있다.

한편, 청문 또는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대상자에게 2주 내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반환하도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고, 만일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의 관리현황 확인결과 대상자에게 재판정 및 촉구통보 기한을 초과하여 안내하거나, 재판정(촉구)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으며,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재판정 유예사유의 적정성 확인이 미비한 대상자를 유예처리 하였고, ㄱ 등 0명은 동장의 사전 유예결정 절차 없이 담당자 직권으로 재판정을 유예하였다.

또한, 재판정 대상자 ㄴ 등 0명의 경우 재판정 기한일로부터 00일~000일이 경과된 시점에 재판정 또는 장애등록 취소처리를 하였으며, 특히 대상자 ㄷ은 재판정 기한일인 20**.**일로부터 감사자료 제출시점(2021. 2월)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등록 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시정] ① 장애 재판정(유예기간 포함)기한 만료자 0명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 등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이 지연되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도래자에 대한 재판정 및 촉구통보 기한 준수는 물론, 타당성 검토를 통한 재판정 유예결정과 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그리고 재판정 불이행자에 대한 장애인등록취소 절차이행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어린이집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과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영유아보육법」제2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은「영유아보육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에 따르며, 「영유아보육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현황 확인 결과, A 등 0개소에서 5명 미만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B 등 00개소의 경우 2분의 1 미만으로학부모 대표를 구성하였고, C 등 00개소에서는 지역사회 인사를 운영위원으로 미위촉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D 등 00소에서는 연간 4회 미만으로 운영위원회를개최하였음이 확인되었으나, 남동구 ○○과에서는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어린이집 정보공시 위반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기위한 제도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의 6 제2항, [별표 1의5]에 따라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즉 어린이집기본현황, 보육과정,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예산·결산 등 회계, 건강·영양및 안전관리, 그 밖의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시한 정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의7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시하여야 하고, 만일 어린이집의 원장이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부모들이 어린이집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정보공시 준수사항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공시정보 항목별최소 0개소, 최대 000개소의 어린이집 위반사항과 개소 당 1개 ~ 5개의 위반항목이확인되는 등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시정] 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향상과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수행을 위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도록 운영위원 정수 및 학부모대표 위촉비율, 지역사회 인사위촉 사항 등 위원구성 부적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주시고, 위원회 개최횟수 미충족 어린이집에서는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적극 개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아울러,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누락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정보공시 항목별 공시범위 및 횟수, 시기를 준수하여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게시하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집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에 따르면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뜻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적정하게 접수·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이와는 별개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에 속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3명 이상 다자녀가족 및 맞벌이 가정에 속하는 일반아동 외에 총 정원의 60% 이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가정,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정,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 취약 아동을 이용아동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후원금 관리 분야의 '후원 제한'사항으로 이용아동의 60% 이상이 돌봄 취약 아동인 만큼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후원금(물품)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00개소의 후원금 모금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00개소에서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이용아동 보호자 00명으로부터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중 총 000천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며, 일부후원자는 000천원, 000천원을 일시금으로 후원하였고, 상당수의 후원자들은 월 00천원부터 00천원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20**년부터 20**년 *월까지 후원자 개인으로부터 최대 000천원이 모금되는 등 이용아동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 현황을 담당부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역아동센터 '후워 제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권고] 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60% 이상이 돌봄취약 아동이며, 돌봄 필요 아동의 보호·교육을 위한 시설이 지역아동센터임을 숙지하시어, 이용아동 보호자로부터 후원금 모금이 지양되도록 하시고,
 - ② 특히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 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 상 이용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 지양이 명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공무직의 휴업급여 청구관리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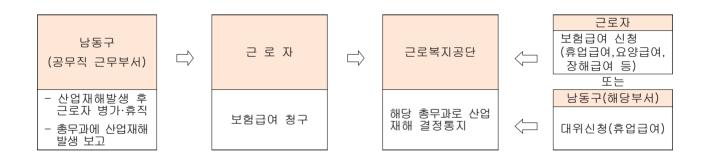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외 3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〇〇과는 공무직 및 기간제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의 분장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부서별 보험급여 신청절차는 [그림]과 같다.

[그림] 업무상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신청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1호 및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말하고, 휴업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52조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같은 법 제 89조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남동구)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남동구)는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고 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권리 소멸 시효는 3년이다.

한편 남동구 공무직(환경미화원 제외)의 「단체협약」제60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며, 휴업급여 수령 시 휴업급여는 정상근무자의 임금에 부족금액을 90일에 한하여 보전하여 지급한다.

또한 환경미화원의「단체협약」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을 제외한 20%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임금협약서」제9조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법정수당·가족수당을 합산한다.

2018년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 총 00건 중 0건의 휴업급여 관리 내역을 보면 수급권자(근로자)가 수령 후 남동구가 미리 지급한 급여를 반납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항목을 미신청하였으나 남동구는 대위수령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 등이다.

환경미화원 ㄱ은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00일분)를 제외하고 신청하였으나 OO과는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급여의 반납을 요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대위신청을 하지 않았고, OO과의 ㄴ도 동일하게 미리 지급한 급여(00일분)를 환수하지 않았다.

또한 OO과의 ㄷ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000원)하였으나 OO과는 미리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면서 병가일수를 착오 산정하여 미리 지급한 00일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000원)을 누락하고 일부 금액만 환수하였다.

교은 산업재해결정일(2020. 8.25.~ 11.30.)중에서 일부 기간(2020. 8.25.~9.30.)은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여 ○○과는 신청한 기간(2020.10. 1.~11.19.)에 한하여 미리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였다. 그러나 ○○과는 근로자가 일부 기간(2020. 8.25.~ 9.30.) 미신청한 휴업급여에 대해 대위신청 가능 하였고, 나머지 2020. 11.20.~11.30. 휴업기간에 미리 지급한 급여를 환수를 했어야 했다. 한편 2021년 감사기간 중 확인결과 ㄹ은 추가로 휴업급여(2020. 11.20.~11.30.)을 수령후 미반납하였다.

한편 OO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받은 환경미화원 ㅁ의 휴업급여를 환수하면서 평균임금에 이미 반영된 가족수당을 추가로 착오산입하여 산출함으로 써 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① 해당부서가 미환수한 급여를 대위청구 또는 근로자를 통하여 조속히 환수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부서별로 배치된 공무직의 휴업급여 청구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총무과에서 교육 또는 안내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취득 후 관리 미비

기 과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외 6개 부서

내 용

1. 신축 후 건물 미등기 또는 지연등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취득 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유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에 밟아야 하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지하고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OO과의 A도서관(약 1월 지연), OO과의 B어린이집·C경로당 (약 1년 1월 이상 지연) 및 D센터(약 2월 이상 지연), OO과 E자전거대여소(약 1월 이상 지연)는 신축 후 6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2021. 4. 9. 감사일 현재 건물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아울러 OO과(F경로당) 등 0개과는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지연하여 건물등기를 하여 재산관리에 소홀하였다.

2. 신축·매입한 건물의 손해보험·공제 가입 지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행정복지센터는 20**.*.*. 청사신축 이후 인수받아 약 8개월 이상 지연가입하여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초래될 재정적 손실에 대비하지 못했다.

조치할 사항 인천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① 해당부서에서는 취득 후 건물 미등기 된 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조치하시고 ② 재무과는 해당부서에서 취득한 재산의 등기지연 및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지연가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개선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사용허가 및 대부시 공제금 부과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ㅇㅇ과 외 4개 부서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등에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9조·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0조 [별지 제8호서식] 허가 조건 제6조·[별지 제9호서식] 제6조에 따르면,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본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000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보험료(또는 공제금) 부과 규정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등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으나,「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공유 재산 사용·수익허가[별지 제8호서식] 제6조 및 대부 시 [별지 제9호서식] 제6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자가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가 미리 보험료 및 공제금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되고 사용자가 미갱신 또는 지연가입시 공유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공제금 미부과

남동구의 사용·수익허가 건의 공제보험료 부과확인 결과 남동구 OO과는 해당 공유재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였고 사용자들은 손해보험에 개별가입하지 않았음에도 OO과의 ◇◇동 ***-* ◇◇베이커리 등 0개소에 대해 남동구가 가입한 공제보험료를 미부과하였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하면서「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제6조의 "구에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사용인은 당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누락(▽▽동***-*** 제외)함으로써 공제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어 재산관리에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시정] 향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시(갱신포함)에는 공제금 부과 조건 등이 포함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미부과된 공제 보험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재무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취지에 맞게 해당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제6조를 조속히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ㅇㅇ과 외 2개 부서

내 용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및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부담하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받아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민사소송법」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따르면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한 경우는 같은 법 제98조를 준용하여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남동구「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3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및 제24조(소송비용 회수업무)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로 확정되었거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소송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남동구에서 2017. 7월~2021. 4월까지 소송비용을 부담한 이후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취하로 종결된 소송사건 총 00건 중 0건은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였고 0건은 소송비용 청구 진행 중에 있다.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받은 0건 중 0건(50%), 000원은 회수가 완료되었고 0건 (50%), 000원은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납부독촉 및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고 회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0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업체 행정처분 등 미이행

기 과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 등을 위해 건설산업 정보망(KISCON)4)을 통해 하도급제한 위반 및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빅데이터를 교차 확인하여 적발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일괄 하도급 등 법 위반 혐의업체 현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통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통보 내용 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은「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 시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3호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같은 법 제99조(과태료) 제3호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⁴⁾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 건설행정정보시스템, 원·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 벌점통합관리시스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정부인트라넷으로 구성된 건설산업정보의 유통·활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

또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건은「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제81조부터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기간 중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건을 확인한 결과 2017.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00건(건설공사대장미통보 0건, 등록기준 미달 00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0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등록기준 미달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남동구 〇〇과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총 000건(2017.6.~2021.3.) 중 00건(9%)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건설업등록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 사실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적시에 실시하여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물놀이장 조성공사 조합놀이대 물품구매 발주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1. 조합놀이대 물품구매 검토 미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6호라목에 따르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1)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함)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에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할 사항으로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 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또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¹⁾ 물품·용역 2억 1천만 원

나라장터에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쇼핑몰에서 조달 구매를 하는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조달청 고시「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5천만 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구매할 경우에는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가격제안을요청하여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최대10%까지할인된가격으로구매할수있다.

남동구 〇〇과는 'ㄱ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ㄴ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ㄷ공원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필요 물품인 조합놀이대를 우수조달공동제품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계약예규에 따르면 설계서 등에 특정모델 등을 지정하여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특정제품이 명시되지 않은 표준시방서로 설계한 후 발주 검토 시계약 방법으로 우수조달공동제품으로 구매결정 한 후에 수의계약을 요청하여야하나 ㅇㅇ과는 산출내역서 및 제품규격서에 물품분류번호와 물품 식별번호 및모델명(BWA18-0101, ELWPG-03, BWA12-3110)을 지정하여 설계하고 해당 물품을 구매하였다.

또한 성능,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 타제품 및 유사제품과의비교,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의 제시로 제조·구매가 불가능한지, 특정회사 제품이반드시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어야 하나 남동구 〇〇과의 'ㄱ 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ㄴ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ㄷ공원 정비공사' 추진계획서에는 조합놀이대의 규모와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품에 대한 별도의 내부검토문서는 없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위 산출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 계약금액(0억 원) 대비 조합놀이대 금액(0천만 원)의 비율은 37%에 불과하였다. 조합놀이대가 우수 조달공동제품이라는 이유로 1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물놀이장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조합놀이대를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방법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으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조합놀이대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면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으로 서울특별시(00), 인천광역시(0), 경기도(00), 타 시도(00) 등 총00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기준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시 경쟁을 통하여 최대 10%의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

2. 분리발주 대상 전기공사 통합 발주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에는 계약의 특성상 통합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과공사를 동시에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전기공사업법」제3조에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제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합놀이대 설치내역서에 반영된 전기공사 0천 0백만 원 정도를 분리하여 전기공사업을 등록한자를 대상으로 분리발주 하여야 함에도 전기공사를 포함 일괄 발주하여 1인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시 대체·대용 제품 존재 유무, 성능, 경제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물품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공유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심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1. 신기술·특허 공법 심의

남동구에서는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평가 절차를 체계화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20**.*.**.)수립하여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 중 특정 기술 등 독점적 기술에 의한 공법 및 자재를 적용하는 전체 대상 사업 적용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발주부서의 과장이며 자문위원은 계약 담당 및 사업 관련 직렬의 팀장급 6명 이상으로 안건 발생 시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다.

남동구 〇〇과는 불량 하수관거(맨홀, 관로, 박스)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의 보수공정에 신기술·특허를 사용하기로 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신 기술·특허 공법을 선정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1)에 따라 발주청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 완료 후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기술보유자의 신기술·특허를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다) 및 라)

그러나 ○○파에서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기술 비교·검토를 하여야 하나 신기술공법 심의 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이유로 맨홀인상 공법은 2017~2021년 5년 동안 인천 소재 업체 0개의 공법에 대해서만 비교·검토하고 다른 형식이나 공법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5년 동안 □□건설(BTT공법) 0회, ■■건설(OR-MC공법) 0회, ▲▲건설(QMR-II 공법) 0회, △△개발(EPM 공법) 0회 등 연도별로 공법을 다르게 선정되었다는 점, 선정 횟수가 비슷하다는 점을 볼 때 자문위원회의 평가기준인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기타사항 등에 대한 평가가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기술 공법별 특별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지역 업체의 4개 공법만 검토하여 다른 공법을 가진 업체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강·보수 특허공법 심의 현황을 보면 연도별 공사 건수와 동일 건수의 특허 공법을 선정하였으며 각 공사 구간 별로 다른 특허공법을 사용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면 각 특허공법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공 이후 각 특허 사용에 대한 자료를 축적 하고 평가하여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경쟁 운영요령에 따른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에는 신기술·특허 보유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기술력을 제공하거나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술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하도급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 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고 되어 있다.

남동구 OO과에서 발주한 신기술·특허 공법이 포함된 공사 하도급 현황을 확인

한 결과 1건만 입찰에 낙찰된 원도급자가 공사하였고 나머지는 원도급에서 신기술·특허 공법 기술 사용협약을 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으로 남동구에 통보하였고 남동구에서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하도급계약을 승인한 것을 볼 때남동구가 신기술 및 특허공법 선정 업체와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 건설신기술 사후평가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제54조에 따라 신기술 사용자에게 신기술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신기술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주청에서는 건설신기술 해당 공종 준공 후 1개월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사후평가서를 입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후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 〇〇과는 불량 맨홀 인상 및 하수관로 비굴착 단면보수 관련 신기술을 사용한 공사에 대해 준공 후 사후평가(2019년 사후평가 시행)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기준 미수립

발주부서에서 자문위원회 자문 필요시 자문위원을 직접 구성 선정하고 운영하며 특정 공법 심사대상이 되는 비교공법을 선정하고 심사 자료를 작성하므로 내부 및 외부의 청탁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행정안전부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고 우수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20.12.30.공포, '21.4.1.시행)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21.4.22.)까지도 남동구 내부에서는 주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주의] 신기술 공법이 사용된 공사는 해당 공종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신기술 사후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 및 공법선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자문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시기와 내용 및 평가방법에 대해 누리집과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공고문에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ㅇㅇ실 외 1개 부서

내 용

남동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의 제조 및 구매 관련 계약 등 각종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제2조에 따르면「지방회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남동구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의 총괄적 수행을 위한 회계책임관은 재정경제 국장으로 지정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재무관은 동장으로 하되 추정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의 경우에는 본청의 분임재무관(재무과장 등) 및 재무관(재정경제국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각종 계약업무는 동장이 수행하되, 남동구 소관 회계의 총괄적 수행은 재정경제국장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남동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르면 남동구청장은 동 주민센터의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및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에 부쳐야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유형별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하인경우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일반입찰을 기준으로 하되 수의계약은 일반입찰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에 있어서 재량이 많은 만큼 계약 수행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다양한 업체를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동구 0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동 청사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관내 유사한 자격(사회적 약자기업 중 "청소, 소독" 업종)을 갖춘 00개의 업체가 있음에도 모두 같은 업체와 반복적으로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특혜 시비를 일으키는 등 공정성과투명성이 저해된 계약체결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해당 업체를 선정하기 전 타 견적 비교 및 타 업체의 계약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노인 친화 사회적기업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은 각각의 계약체결 과정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동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비롯한 남동구 전체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책임관 등의 관리, 감독 적정성을 지적하는 사항과는 다소 연관성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권고]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감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체결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ㅇㅇ과 외 11개 부서

내 용

남동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간 중 총 00건의 공사에 대하여 00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나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하도급 통보서 및 첨부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체결한 000건의 하도급 계약 통보사항을 검토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모두 검토하였으나, 00건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는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 관련 서류 검토 시하도급심사대상 공사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미술품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1조,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구매요청 하며, 구매, 기증, 소관전환 등으로 취득한 미술품을 새올행정 미술품관리 시스템의 미술품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고, 미술품대장 등재 시 반드시 작품사진을 포함하여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미술품 현품을 직접 촬영하되 작품의 등급분류, 감정의뢰 기초 자료 및 작품 감상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촬영하여야 하고 창문이나 커튼 불빛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그림과 촬영자의 눈높이가 맞도록 정면에서 촬영하고, 편집 시 사진의 액자 등은 절삭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미술품은 작품가격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취득 후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A, B등급으로 분류된 작품은 각 분야별 감정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실물감정을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감사일 현재 미술품대장에 등재된 000개의 미술품을 관리하며 매년 미술품의 수요조사 결과 신규 수요가 없었음에도 일정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미술품을 구매하였고, 5년 주기의 미술품 가격 재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미술품대장에 등재된 사진 중 상당수가 빛(등) 비침이 있었고 정면에서 촬영되지 않았으며, 액자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이 등재되어 있는 등 감정의뢰 기초 자료 및 작품 감상용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동구에서는 「문화예술진홍법」 및 「남동구 문화예술 진홍에 관한 조례」 제3조(시책과 장려)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및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지역예술인의 미술작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미술작품 구매 수요조사만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매년 미술품 일제점검 결과에 따른 미술품의 폐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수요가 없는 미술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증가된 미술품의 적정 배치 및 관리가 곤란해져 미술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요조사 결과와 다르게 미술품 구매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미술품 가격 재평가를 실시하시고 미술품대장에 부적합하게 촬영 등재된 사진을 적합하게 재촬영 등재하시기 바라며, 소장 미술품의 적정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미술품 수요를 반영한 미술품을 구매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미술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도로 점용료(지하매설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1. 업무 개요

도로의 구역 내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가 관리청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관리청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한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도로법시행령」제7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로점용료 징수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적사항

남동구(〇〇과)에서는「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20**년 A공사 인천본부에서는 ¬ 주택지구 ◊◊로(전력구, 환기구 등)에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하여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전력구는

20**.**.**. ¬ 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 준공(국토교통부 공고 제20**-**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반시설(도로)을 인수 받으면서 ◇ ◇ 로 지하에 설치한 매설물(전력구 등)에 대한 관련 자료(도로대장 등) 인수 및 A공사 인천본부의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 확인 소홀로 도로 점용료(지하매설물) 부과·징수에서 약 000백만 원을 누락하고 있으며

또한 A공사 인천본부에서는 "인천시 GIS 행정포털"에 등록된 ▲▲동 ◇◇로 (도림분기) 전력구 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어 도로관리청은「도로법」제72조 (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변상금 약 00백만원)을 부과·징수해야 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시정] ① 도로 점용료(지하매설물) 부과에서 누락된 약 000천 원(변상금 포함)을 「인천 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제4조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기반시설(도로 등) 지하에 설치하는 각종 매설물 대하여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장물 매설 설치 준공도면[지리정보시스템(GIS) 포함] 등을 제출 받아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와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도로 지하 매설물 점용에 대한 협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원·녹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 과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르면 시장 등은 제24조제1항(공원점용) 또는 제38조제1항(녹지점용)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제14조(점용료)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같은 조례 [별표1]에서 정하는 요율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남동구 ○○과에서는「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공원·녹지의 점용료(면적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부과·징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 A공사 인천본부에서는 ㄱ 주택지구의 경관 *호 녹지 외 0개소 지하에 매설물(전력구, 환기구 등)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하여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전력구는

20**.**.**. ㄱ 주택지구 조성 1단계 사업 준공(국토교통부 공고 제20**-**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반시설(공원·녹지) 인수 하면서 지하 매설물(전력구 등)에 대한 관련 자료 인수 및 A공사 인천본부의 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확인 소홀로

공원·녹지 점용료(지하매설물) 부과·징수에서 약 000백만 원(점용면적 1,502㎡)을 누락하고 있으며

또한 A공사 인천본부에서는 "인천시 GIS 행정포털"에 등록 된 **0 경관 0호 녹지 등의 전력구에 대하여 2014년부터 점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어 무단 점유기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 재산(공원, 녹지)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약 00백만 원의 금액(변상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시정] 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에서 누락된 000천 원(변상금 포함)을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 ②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기반시설(공원·녹지) 지하에 설치하는 각종 매설물 대하여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장물 매설 설치 준공도면[지리정보시스템(GIS) 포함] 등을 제출 받아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에서 누락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시행자와 개발계획 수립때부터 공원·녹지 지하 매설물 점용에 대한 협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도시계획시설사업 행정절차 미 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관련 법률

「국토계획법」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 검사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 신청을 받아 변경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2. 지적사항

남동구에서 추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살펴보면 ◎◎동 소*-*호선 도로 개설 공사(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0건은「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행정절차(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열람공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을 이행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공사완료 공고 미이행하여 관련 법률을 위배 또는 행정절차(실시계획 인가)를 반복 이행하는 등으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남동구에서는 "◎◎동 소*-*호선 개설공사"등 0건 000필지 28,460㎡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공사가 준공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적 소관청 (남동구 ○○과)에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지목 변경 등 신청을 하지 않아 여러 필지로 분할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변경된 토지이용 현황과 지목이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적 장부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시정] 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검토·조치하시고, 미완료 공고된 공사완료 사업은 조속히 완료공고 조치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개선 요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관련

기 과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외 6개 부서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 (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한다)」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남동구 ○○과 등 0개 부서에서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00개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현장경계 휀스, 차량유도 등, 라바콘'등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 간판 등의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역(약 000천 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집행하였다.

남동구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 관리비에 대하여 사용 확인 및 정산 등에 있어 정산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사 마다 편차 있는 사용 내역 등을 시공자가 제출하여도 감액 조정 없이 지급하고 있다.

남동구에서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 개설공사'에 안전화 1컬레를 000원에 구입하였는데, 동일 년도 추진한 '回回 개설공사'에서는 안전화 1컬레를 000원에 구입하는 등 안전화, 안전모, 산업용 마스크 등의 구입 비용이 건설공사 마다 편차 있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도 안전관리비 정산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공사가 제출한 사용 내역 원안으로 감액 조정 없이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개설공사'(공사기간 12개월)에 안전화 00켤레 구입하였는데, 동일 년도에 추진한 '▷▷개설공사'(공사기간 12개월)에서는 안전화 00켤레 구입하는 등 안전 장구 지급에 따른 지급대장(지급자 주소,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등과 연계 하여 사용 내역을 확인 및 정산 하여야 함에도 시공사가 제출한 구매 영수증과 사진만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공사기간 및 투입인원에 비해 과도하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도 감액 조정 없이 지급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정산) 실무 가이드(예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0000-00호, 0000.00.00.]에 따른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확인(정산)
- 안전장구[안전화 한 켤레 60,000원] 확인(정산)
- 안전관리 사용내역 확인(정산) 방법
 - 사용내역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 확인(정산)
 - 안전관리비로 집행(구매)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안전장구 지급대장 작성 및 중 빙사진**(근로자 착용 전신 사진 등) 확인(정산)
 - 안전관리비로 구매하는 단일물품(100만 원 이상) 등은 손율 또는 렌털로 구입 정산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약 000천 원 상당액을 환수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 [개선] 향후 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 정산할 수 있도록 연초 건설사업 설계기준(안) 작성에 안전관비 사용내역(정산) 확인 가이드를 작성·수록하여 안전관비 집행(정산) 증빙자료 확인에 활용 부당 사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개발사업²⁾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금액³⁾으로 부과 종료시점⁴⁾부터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동 **-*번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⁵⁾를 받아 20**.**. 준공을 받은 ㄱ에 대하여 20**.**.*.까지 개발부담금 000천 원을 부과하였어야 하는데도, 법정 결정·부과일보다 0일 초과한 20**.**.**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를 비롯하여 20**.*.*.부터 20**.*.*.(준공일기준)까지 개발행위허가 준공 등을 받은 총 00건에 대하여 법정 결정·부과일까지 개발부담금 000천 원(총 000천 원)을 결정·부과하였어야 하는데도, 법정 결정·부과일보다 최대 000일을 초과하여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 하였다.

²⁾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의 건축 등) 등

^{3) &}quot;종료시점지가(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개시시점지가(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설계비. 공사비 등)"의 20~25%

^{4) &}quot;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함(같은 법 제9조 제3항)

⁵⁾ 지목변경(전 → 대지)에 수반되는 사업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결정·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개별공시지가 결정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단위면적당 가격(원/m²)를 말한다.

지가산정 결정 절차의 중요한 업무인 "토지특성조사"는 연중 상시조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토지특성 조사 기간 중에는 공시기준일 현재 토지특성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중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거래도 일단으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조사의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1필지의 토지로 보고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사일 기준 남동구 관내의 2필지 이상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 ° 동 ****외 0필지 외 000건이 *필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 • 동

***-*외 0필지 외 00건의 공시지가가 토지용도 유형별 일단지의 범위인 공동주택, 공장 등 주거용지 및 공업용지 등에 조성된 건축물이 있어 일단지로 사용 중에 있음에도 토지특성조사를 소홀히 하여 일단지로 적용치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부적정하게 결정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중요자료임을 감안,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2022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시 반영 조치하시기 바라며, 매년 일단지 토지특성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개선 요구

제 목 건물번호의 폐지절차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외 1개 부서

내 용

「도로명주소법」제8조(도로명 부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건물번호의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르면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 등의 멸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 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날을 말한다.)을 폐지일로 하여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를 폐지하고 사실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일 기준(2017. 6. 1~2021. 3. 20)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의 건축물 철거·해체(말소)현황을 확인한 결과, 남동구 ▲▲동 **-*번지 외 000건의 철거·해체(말소)가 시행되었으나, 이 중 000건에 대하여만 폐지·고시를 이행하고, ● ●동 ***-*번지 외 00건의 말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번호의 폐지·고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시정] 건물번호 폐지 미고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라며, 도로명 주소 부여 시스템(KAIS)등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건축 관련 부서에서는 건축물의 철거·멸실된 때에는 지적 관련 부서에 철거·멸실 사항을 통보하여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지적기준점(도근점)관리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6)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조(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설치·보수하거나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또한「지적업무처리규정」제5조(지적기준점의관리협조)에 따라 지적기준점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 관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시행 시지구계 측량을 위하여 설치된 지적기준점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도로 재포장 등의사유로 중복 설치된 남동구 ◎◎동 000번지 소재(기준점명 ***)외 00점에 대하여폐기 고시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조치한 사실이 있으며,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시 누락 망실된 지적기준점 ▽▽동 ***-*번지 소재(기준점명 ****)외 0점에 대하여 재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⁶⁾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남동구 기준점 관리현황 : 3,399점)

또한 지적기준점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연 1회7 이상 지적기준점 관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나, 2019년 및 2020년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기준점 재설치 및 폐지고시 등의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도로포장 등 공사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지적 기준점 표지의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지적기준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⁷⁾ 지적측량기준점의 유지관리 협조 요청(토지정보과-4586(2021. 3. 8))시행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장기 미착공·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할수 있음), 공사에 착수하였어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이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건축허가(신고) 대지 주변의 환경·토지이용계획, 관련 법률의 변화 등에 따라 추후에 공익에 반하는 건축물이 건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구청장은 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시정명령)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2015년 이전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착공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남동구 ▲▲동 ***-*번지 등 00건의 건축허가(신고)가 나대지 상태 등으로 실질적으로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하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허가(신고)는 취소 등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건축법」제38조(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일 기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의 2필지 이상의 건축물대장 현황은 '。。동 **** 외 0필지 외 000건이 2필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토지이동사항을 확인한 결과, 。。동 ****-** 외 0필지 외 000건이 토지이동(합병)되어지번이 말소되었음에도 건축주 신청주의 원칙이라는 사유를 들어 건축물대장의지번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임야분할·합병 신청서 사본)가 첨부된 지적 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협의 등의 조치를 이행치 아니하여 토지와 건축물이 불일치되는 사항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토지와 불일치 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지적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정리하시기 바라며, 건축물대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기계식주차장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〇〇과

내 용

「주차장법」제19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같은 법 제19조의2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8)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법」제19조의10, 제19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검사확인증과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관리인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주차장법」제19조의4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관계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⁸⁾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함.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관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000개소 중 정기 검사·정밀안전검사 미 실시 00개소(15%), 검사확인증·기계식주차장치 이용안내문 미 부착 00개소(12%),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미 선임·보수교육 미 이수 00개소 (17%) 등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기계식주차장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시정] ① 관계법규를 위반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현장 방문확인 등을 통해 그 위반 사유를 파악하여 각종 검사의 실시 유도 방안 및 기계식주차장 관리인교육·보수교육의 이수율 제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기계식주차장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설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소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지역지원사업⁹⁾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 최근 3년간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 미 작성,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미 기입, 하자검사 미 실시 등 태양광발전설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전 설치를 위한 관련규정 미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5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의 양도·이전·처분 등을 하려면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함.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설치한 · · 동 행정복지센터와 · · 동 행정복지센터의 대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기존 청사 이전(신축)에 따른 설비의 이전 설치를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센터(한국에너지공단)의 장에게 설비의 이전 승인을 받은 후 철거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이전 승인 신청 전에 해당 설비를 철거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전환에 따른 준공서류 이관 소홀

남동구 ○○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상시점검을 통해 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ㄱ복지관 등 00개소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20**년 **월 사용부서(기관)로 관리전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남동구 〇〇과에서는 관리전환부서(기관)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전환합의서를 인계인수하였으나, 관리전환된 설비의유지관리를 위한 준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유지관리매뉴얼, 준공사진첩, 설비점검표, 납품업체 현황,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인계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사전조사)기간에 인지하여 2021년 4월 15일이 되어서야 배부하는 등 준공서류(전자파일 포함)이관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시정]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 작성·비치,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기입, 정기·하자만료검사 실시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 [주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양도·이전·처분 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철저히 준수하시고, 설비의 관리전환 시에는 준공서류(전자파일 포함) 이관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선 요구·권고

제 목 골목길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 계 부 서 ○○과

내 용

남동구 ○○과에서는 관내 골목길 노후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 LED보안등기구로 교체하여 야간 골목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매년 'ㄱ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관급자재 지급 및 관리 업무수행 절차 개선 필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업무''제5절 자재관리 업무'제155조, 제156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반입된 모든 검수자재를 시공자 책임 하에 보관 및 품질관리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로부터 지급자재청구가 있을 경우 품명, 규격, 수량, 사용처가 명시된 자재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LED보안등기구 50W)를 매년 0~0천만 원 가량을 구매하여 시공자로부터 별도의 지급자재청구를 받지 않고 일괄 지급하였으며, 시공자가 지급받은 자재에 대하여 지급자재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기록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관급자재 지급 및 관리 업무수행을 소홀히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수행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2. 관급자재 구매 시, 물품 계약방법(다수공급자계약10) 2단계경쟁) 확대 검토 필요

남동구 ○○과에서는 매년 '¬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LED보안등기구 50W)를 구매하고 있으며, 20**년, 2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생산품을 우선구매하였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은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3조, 제6조에 따라 동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1억 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5개사(2개사 가능) 이상의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가격제안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최대 10%까지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20**년, 20**년 공사 관급자재 구매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LED보안등기구의 구매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10)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 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 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함.

생산품의 우선구매 실적11) 달성을 위하여 제3자단가계약의 방법으로 동일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물품 계약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및 객관성 확보, 계약 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최대 10%) 적용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공사발주 검토 시, 인천 지역 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2개사)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1개사)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물품 계약방법도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개선] 관급자재는 시공자가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파악된 필요 자재에 대하여 자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지급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그 사용내역을 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 준공 시 제출하도록 관급자재 지급 및 관리업무수행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는 관급자재의 구매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및 객관성 확보, 가격제안(최대 10% 할인)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공사발주 검토 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물품 계약방법도 확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¹¹⁾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법정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함)의 0.6%임.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권고

제 목 공공하수도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관리대장 작성 소홀

「하수도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는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는 방법이 열거되어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의 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관리대상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된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고 있어 공공하수도관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기술진단 실시 소홀

「하수도법」제20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기술진단의 대상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도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

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 하수도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제4조[별표 1]에 따르면 하수관로는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술진단을 유예하고자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제외하고자할 경우에는 제외 대상시설 입증을 위한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및 유량 등의 자료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관리 중인 하수관로 456.1km 중 449.2.km의 하수관로가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기술진단 대상임에도, 2021. 4. 감사일 현재 A구역 내 하수관로 2.5km에 대하여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446.7km의 대상 관로는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 점검·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주의] 관리대상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 시 ○○과에서 수립·추진 중인 하수관로 기술진단 단계별 추진계획 및 관리대상 하수관로의 기술진단 유예 신청, 하수관로 불량·노후화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기술진단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시고, 자체 추진계획에 의거 예산 확보하여 기술진단 실시 및 불량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공하수도 사용료(조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하수도법」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부과·징수하고, 하수배출량은 제14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15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제14조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관리청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조정을 위한 민원접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계측장치 설치를 통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사 또는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 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하여 하수배출량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20**년부터 20**년 *월까지 00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사용자)이 제출한 하수배출량 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하수배출량을 검토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조정(감면) 처리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조정(감면)을 위한 하수배출량 검토 시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선 요구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고,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2021.1.12. 법률 제17900호로 개정되어 2021.7.13. 시행 예정인「주차장법」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이「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남동구에는 총 149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관리 중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총 4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동구 ○○과에서는「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및「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노상·노외·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망사고 발생을 계기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정이 강화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21. 1. 12.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의무화되어 2021. 7. 13. 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이번 감사기간(2021. 4. 19.~ 4. 30.)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점검 결과 주차면수 000면 중 00면만 폐지(삭제)가 완료되었고 현재까지 000면이 존치되어 있어, 관련법령의 시행에 앞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가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개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개정된 관련법의 시행(2021.7.13.)에 앞서 관련예산 확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적극 추진 하시기 바라며, 대체 주차장 확보 및 적극적인 민원응대를 위하여 담당자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로도 해소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부적정

기 관 명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A환경 등 0개사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1.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제1항 및「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남동구 규칙 제951호, 2017. 5. 31.)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0,000천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금액이 50,000천원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 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재무관이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 공고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에 따르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발주는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 제한적인 경우 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 〇〇과에서 20**.**.**. A환경 등 0개사와 체결한 "20**년도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계약금액: 000천원)"의 계약금액이 각각 50,000천원을 초과하는데도 재무관에게 의뢰하지 않은 채 소관 과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계약법 등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특정 업체와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따라 회계질서 확립을 소홀히 하였다.

20**.**.**. A환경 등 0개사와 체결한 "20**년도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계약금액: 000천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있는 경우) 제1항제8호사목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사업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계약의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야할 뿐 아니라, 여기서 근거한 다른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2항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폐기물처리업자12)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¹²⁾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으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정하여 시·도지사(군수·구청장 위임)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

20**.*.**.~**.과 20**.**.**. B환경 등 0개사와 체결한 "20**년도 및 20**년도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계약금액: 000천원, 000천원)"은 긴급한 행사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 제한적 경우에 해당하는 긴급 사유가 아니고 매년같은 시기에 체결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발주로 입찰공고 함으로써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사후 미정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계약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 입찰공고 등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에 따르면 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도 위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에서 실시한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처리단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20**년 부터 20**년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A환경 등 0개사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한 결과, 위 회사들이 3년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원가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000천원 보다 000천원 적은 000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보험료 사후 정산이 필요한 실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년부터 20**년까지 A환경 등 0개 회사와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문, 계약서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근거 마련이 미흡한 사실이 있다.

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소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이하 "근로보호지침"이라한다) Ⅱ. 계약체결시 유의사항에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개정된 근로보호지침에 따라 적용대상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까지 확대되었음에도 2020년~2021년도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각각 권역별로 00건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근무 인원을 명확하게 사전공고하지 않음 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주의] ①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재무관이 아닌 담당 부서가 일반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수의계약 체결 또는 긴급 발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계약서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입찰공고문에 근무인원을 사전 공고하여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검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등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예규)」Ⅲ. 세부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 및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금지, 종량제봉투의 검수, 품질관리 등에 대한 사항과, 납품된 종량제봉투의 검수에는 검수 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를 하여야 하고, 시험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직접 통보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지침의 라.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판매소와 불법 제작 업체 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 봉투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제출받아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〇〇과에서 20**. *월부터 20**. *.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총 00회에 걸쳐 제작·구매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구청에 납품·입고된 후 검체를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납품·입고되기 전 제작업체 내에서 업체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00회에 걸쳐 검사의뢰 하였고 이 중 0건은 시험 분석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수하였으며, 00회 제작·구매의 경우는 시험분석 의뢰 없이 검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종량제 봉투의 검수 시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검수 공무원이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하시고 적합한 경우에 검수를 하시기 바라며, 판매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미수립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①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②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처리 계획, ③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④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설치 계획, ⑤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 방법 등)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31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5년 주기의 "2017~2021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과-****, 20**.*.**.)을 수립하였으나, 매년 개최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발생사업장 관리 소홀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④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등 5개 업종과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조례 제1771호, 2021. 3. 12.)」제19조에는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율이 22.8%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3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처리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산업단지의 악취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1. 산업단지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 소홀

「악취방지법」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등)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같은 법 제7조(배출허용기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계획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하 "점검규정"이라 한다)」 제4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에 따라 구청장은 신고된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적정 설치·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시료 채취 등에 대하여 점검규정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규정에 따라 정기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연 1~3회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〇〇과에서는 악취관리지역¹³⁾으로 지정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악취배출시설을 관리하면서 관할구역 내 신고된 악취배출시설 중 85.4%(2021년

^{13) 2006. 1. 14.} 남동국가산업단지(9,982㎢)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7호]

감사일 현재 기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기타지역 보다 중점관리를 하여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평균하여 기타 지역의 점검율 61%와 비교한 결과 12%로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무인악취포집장치 구축 및 설치사업 사전 검토 미흡

「악취방지법」제3조제1항(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따라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환경부, 2018.12.)의 제5부, Ⅲ.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에 따라 남동구청 환경보전과는 국·시비 85%의 지원을 받아 악취관리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실태를 파악하고 악취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무인악취포집장치 구축 및 설치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였다.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등 적정 지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활용 방법,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시료자동채취장치 구축 및 설치 가이드라인」(환경부)에 따라 무인악취포집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악취의 순간적인 발생 및 비 지속적인 특성에 따라 포집위치 및 순간 대응시간에 의한 시료분석 결과의 실효성이 결정되므로 지형 및 지리적 위치, 주풍향 조사, 부지경계의 간섭물 조사 등을 통해 적정 설치 위치선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20**년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 및 확대운영계획"(○○과-****호, 20**.*.*.)에는 설치장소(위치)를 사전에 선정하지 않고 구매를추진하여 검토에 소홀하였고, "20**년 무인 악취 포집기 구입 및 확대운영 계획" (○○과-***호, 20**.*.*.)에 반영된 설치위치¹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설치 완료된

^{14) 2021}년 설치 계획(3대) : 남동공단 입구 부근, 서창2지구 물빛공원,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포집장치의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악취배출시설 000개소 중 000개소 업체가 밀집하고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의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 측정한 후행정처분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굴뚝 직접 설치 등은 배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후관리의 실효성 있는 목적달성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시고, 무인악취포집장치 설치현황 및 악취배출시설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포집장치 설치 위치의 재배치 등을 검토하여 산업단지의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분뇨 수집·운반업체 관리 감독 미흡

기 관 명 남동구

관계부서 ○○과

내 용

「하수도법」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제5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영업행위 및 그와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제3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계약에는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 대행 기간,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집·운반 차량에 관한 사항(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 등 구비),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같은 조례 제5조(처리실적 보고)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입·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남동구 ○○과는 20**.*.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제14조 (대행업체의 관리 감독)에 따라 '구청장'은 '대행자'에 대하여 분뇨수집·운반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과 분뇨수집·운반 대행의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기준은 계약서 별표1에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20**. *월 부터 20**. **월 까지 매월 분뇨 수집·운반 업자로부터 분뇨 청소실적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제출 받으면서 @@처리시설로 입고된 반입량과 실제 청소한 실적보고량을 확인한 결과 연도별로 20**년 000톤(0.1%), 20**년 000톤(2.9%), 20**년 000톤(0.3%), 20**년 000톤(6.4%)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지 않아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청소실적 보고량의 누락(초과) 및 수수료 초과 징수등 '대행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하여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처리시설 주변 분뇨 수집·운반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지속적인 악취발생 문제와 관련 시 ○○과로부터 관리 감독 요청 공문을 수 차례 받으면서도, ○○공단에서 실시한 20**.***.분뇨처리시설 주변 불법 주·박차 현황 점검 당시 남동구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 전체가 불법 주·박차 진행중으로 확인되는 등의 상황을 인지하고도, 협조공문 발송과 지도·점검 시 계도만을시행한 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대행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시의 조치 근거 규정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 [시정] 분뇨 수집·운반차량의 불법 주·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시고, '대행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시의 조치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청소 실적보고량과 가좌분뇨처리시설로 입고된 반입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분뇨 청소업자의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남동구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수범사례 1 청년미디어타워 조성 및 운영 (일자리정책과)

□ 추진배경 및 목적

- 5년간 방치되어 있는 남동타워 유휴시설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재정비하여 청년미디어타워로 재개장하였으며,
- 청년주도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미디어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창작 플랫폼 시설 구축으로 청년미디어활동가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개요

- 조성기간 : 2019. 8월 ~ 2020. 9월
- 이용주체 : 청년 * 교육, 체험, 관람 등 프로그램 이용대상자는 제한 없음
- 사업내용
 - 남동타워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미디어 창작활동 공간 조성
 - 청년 미디어 창작활동 지원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성과 및 운영

- 관련조례 제정 : 2020.05.15.
- 청년미디어타워 시설조성(949㎡/287평)
 - 녹음·영상 스튜디오, 1인창작실, VR체험관, 카페, 문화공간 등
- 운영 개시 : 2020.9.22일자(※개관식 2020.10.29일자)
- 운영방법
 - 운영목표 : 청년중심 미디어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 운영방식 : 남동구 직영
 - 운영인력 : 4명(총괄PD, 영상·음향 엔지니어, 행정운영)
 - 운영시간 : 화~토 10:00~18:00 / 일·월요일, 공휴일 휴무



녹음스튜디오



영상스튜디오



VR 체험존



다목적 홀(공연, 강연 등)

□ 기대효과

○ 청년주도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미디어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창작 플랫폼 제공 및 청년 미디어 활동가 육성을 통해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



수범사례 2 청녕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일자리정책과)

□ 추진배경 및 목적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기본인 창업공간을 구축 하여 이를 제공하고, 센터 내의 교류와 상생을 통해 청년기업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8월 ~ 계속

○ 규 모: 1151.99㎡(348.48평) / 전용 622.09㎡(188.19평)

○ 주요시설

- 창업사무공간 10개(※인천최초 독립사무공간), 코워킹스페이스(4개팀), 공유 OA, 카페, 공방(1개소), 다목적실, 3D프린터, 촬영스튜디오, 탕비실 등

□ 사업내용

- 입주자 모집(기획전개최) 및 선정 : 2019. 2월 ~ 3월.(12개팀 공개모집)
- 청년창업 기업 입주 : 2019. 4. 8.
-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 : 2019. 4. 16.(IT, 물품개발, 미디어콘텐츠 분야 등)

□ 사업성과 및 운영

- 【전국최초 사례】 입주기업 사무실 무상제공. 입주기업 사무실 24시간 개방 등
-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 창업공간 지원, 입주한 청년 기업 간 교류와 상생 유도
- 센터 입주기업의 총 매출이 45억에 달하는 등 신생 청년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

※ 운영	실적 요약	(2021.3.31.기준)	※ 주요실적 보도자	显			
입 주	기업 수		경인열보 ************************************				
기 업	일자리 창출	121명	(本語を制度を) (2017年7月 2017年7日 (2017年7日 (2	86 66 6 9			
실 적	<i>총 매출</i>	4,545,160선원	\$50.00 to \$10.00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교육등학교 (1942 1945 1945 1945 1945 1945 1945 1945 1945	James III			
지 원	창업상담	459명	##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네트워크	멤버십 가입	615명	中种能物是可能中性CATHER HASS 和图中5内的特殊工作。TF2世纪ABSVarbbookshop	Minaro (한 가수기다. ALC 다음 하시는 유리(HI) 이 한 요. 하시는데요 (보수 하시는 마시는 마시는 이 보는 데요 (보수 하시는 다시는 다시는 다시는데요 (보수 하시는 다시는데요) 보수 나는 다시는데요 (보수 하시는데요) 보수 나는데요 (보수 하시는데요) 보수 보수 보수 되었다면요 (보수 하시는데요) 보수 보수 보수 보수 되었다면요 (보수 하시는데요) 보수 보수 보수 되었다면요 (보수 보수 되었다면요) 보수 보수 보수 보수 보수 보수 보수 되었다면요 (보수 보수 보			
지 원	시설물 이용	42,429명	청원주기업 "여기로" 행정인전부 우수시례 선정	청년입주기업 "쉐코" 대기업(SK)과 협업지원			
입주 기업 주요 제프	입주기업 "쉐 코 "	이즈기언 "원드코스메티 "	14 15 15 15 15 15 15 15				
제품	입주기업 "쉐 코 " 해양유류쓰레기 처리로봇"	입주기업 "월드코스메틱 " 월드퀸 수출 화장품	입주기업 "행복하개 " 반려견웹서비스	입주기업 "파란파랑 " 제주바다캔들			

수범사례 3 남동구 코로나19 자체 대응지침 수립 (안전총괄과)

□ 코로나19 발생 대비 남동구 대응 지침 수립

- 관내 코로나 환자 발생 시 부서별 대응 매뉴얼 수립
 -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서별 역할 확립 및 업무체계 명시화
 - 단계별 대응 : 발생 보고[초동조치] -> 상황판단 -> 현장 조치 및 정보공개



- 청사 내 확진자 발생 시 운영지침(3단계) 수립
 - 코로나19 직원 확진 등 상황 발생 시 조직 운영안을 마련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
 - 단계별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신속한 행정업무 정상화 체계 마련
 - 코로나19 확진 직원 및
 접촉자 발생
 - 접촉자발생 : 즉시 업무배제 코로나19 검사 후 귀가 조치
 - 확진자발생 : 해당 부서전직원 검사 및 자가격리자재택근무 조치
- 1단계 대응지침에도 불구, 확진자 및 접촉자 다수 발생
- 단기간 청사 전체 폐쇄 및
 행정업무 정상화를 위한 대응
 추진단 편성
- 근무지 소산 및 국별 업무 정상화를 위한 국별 현원의 20% 대응 추진단 소집
- 본청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단기간 내 청사개방이 어려운경우
- 임시청사 개청(남동다목적 실내 체육관) 및 비상대책본부 운영
 - 부서별 3~5명(주요민원담당자) 을 제외한 전직원 재택근무병행

1단계(관심·주의·경계)

2단계(심각)

3단계(심각 심화)

수범사례 4 남동논현도서관 건립 (평생교육과)

□ 추진배경

- 책, 사람, 자연을 잇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인 친환경 제로에너지 도서관을 조성하여 자연과 문화교육 기능을 상호 보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소래논현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현재 10만이 넘는 구민이 거주하고 있고, 소래도서관이 규모 대비 이용인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도서관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증대
- 신축 도서관 부지확보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논현 중앙근린공원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정보·문화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남동구 청능대로 611번길 15

○ 규 모 : 연면적 2.378.44㎡/지하1층~지상3층/주차 31대

○ 총사업비 : 8,266백만원(국비 2,300 시비 1,700 구비 4,266)

○ 주요시설

구 분	활 용 시 설	면 적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103.44
1층	안내데스크,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실, 동아리실 프로 그램실, 다목적실, 북카페, 통합안내데스크	1,157.62
2층	종합자료실, 스스로학습실, 멀티미디어실, 사무실, 보존서고(도서반입실)	1,004.62
3층	휴게실, 창고, 옥상정원	112.76

□ 주요성과 및 실적

○ 2016. 8월 : 『(가칭)논현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 2016. 12월 : 남동구 공유재산심의 완료

○ 2017. 2월 :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조건부 승인)

○ 2017. 4월 : 2018년 국비신청 사전타당성 평가 완료(문체부)

○ 2017. 8월 ~ 11월 : 도서관 건립 추진 컨설팅 완료(문체부)

○ 2017. 11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8. 2월 : (가칭)논현도서관 건립 건축 및 인테리어 통합설계 공모

○ 2018. 6월 ~ 12월 : 설계용역 계약체결 및 용역실시(실시설계)

○ 2019. 3월 :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조건부 가결)

○ 2019. 4월 : 설계경제성(VE) 검토 완료(시 건설심사과)

○ 2019. 6월 : 예비인증 취득(에너지효율,제로에너지.녹색건축,BF)

○ 2019. 7월 : 설계용역 준공

○ 2019. 9월 : 착공 및 감리용역 착수

○ 2020. 11월 : 준공 및 준공검사 완료

○ 2021. 1월 : 시범운영 후 정식개관

□ 향후계획 및 관리방안

○ 운영시간 : 09:00~18:00 (휴관일 '금요일'제외)

○ 운영내용 : 도서 대출·반납, 도서관 회원가입(재발급), 도서구입,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및 일부운영) * 코로나19 관련지침에 따라 운영내용 수시 변동

□ 관련사진



외부전경



내부(통합데스크)

□ 보도자료



21.1.18일자 보도자료 일부



20.6.24일자 보도자료 일부

수범사례 5 제2회 남동구 행복나눔 김장한마당 (문화관광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0 남동구 행복나눔 김장한마당 『비대면(Thru-Thru) 김장 체험』

○ 행사일시 : 2020. 11. 14.(토) 10:00 ~ 17:00

- 사전신청접수 : 2020. 10. 05(월) ~ 10. 21.(수)[3주간]

- 사전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및 전화접수

○ 장 소 : 남동구청 어울림광장(구 테니스장) 및 동별 행사장

○ 주 관

구 분	역 할		
남동구	행사기획 등 행사 전반 총괄 운영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후원금 관리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기부금 처리 관련 업무 전반)		
(사)인천광역시식품제조연합회	김장재료 공급		
[남동구 지회]	김장체험프로그램운영(체험비 지출관리)		

※ 공동주관 협약식 체결 : 2020. 09. 25.(금) 14:00

○ 주요 행사 내용

- (김장나눔)동별 자생단체 참여 이웃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 (김장체험)우리가족 김장담그기 행사는 비대면 행사로 대체

• Walk & Drive - Thru 현장 배부 방식 진행(택배 병행)

□ 추진실적

○ 이웃나눔김장 운영현황 : 85,010kg / 약 8,500세대

○ 비대면 김장체험 운영현황 : 97,290kg / 3,550팀

○ 행사 운영 결과

- 방문객 만족도 조사 결과 : 5.36점 / 7점(120명 대상 조사 진행)

- 김장한마당 재참여 의사 : 76% ※ 2019년도 65.5%

□ 보도자료



수범사례 6 꿈나무스포츠단 비대면 훈련 운영 (체육진흥과)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꿈나무 스포츠단의 체계적인 비대면 훈련 방안을 마련하여 비대면 훈련 내실화 및 선수 기량 강화 도모

□ 운영개요

- 기 간 : 2021.1.6. ~ 2021.2.1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 시까지)
- 대 상 :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선수 77명
- 내 용
 - (기 존) 대면훈련 실시
 - (변 경) SNS를 통하여 지도자가 과제 제시 및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제공 ZOOM 실시간 방송을 통한 체력단련 위주 트레이닝 실시

□ 주요성과 및 실적

- 2021. 1월 :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비대면 훈련계획 수립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비대면 훈련 실시 17회
- 2021. 2월 :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비대면 훈련 실시 10회

□ 향후계획 및 관리방안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시 남동구 꿈나무 스포츠단 비대면 훈련 전환

수범사례 7 화상 수출 상담 실시 (기업지원과)

□ 문제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출지원 사업의 추진 불가
 - 수출지원 사업의 취소 및 해외입출국 불가, 종식시기 미지수로 해외 파견 사업 및 행사 불가능 판단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의 필요성 증대

□ 추진실적

7 8	신청 / 선정업체	수출상담회 상담 실적					
구 분	(개수)	상담(건)	상담액 (천불)	계약예상액(천불)			
총 계	61	139	20,655	11,065			
인도네시아	43 / 17	21	8,205	1,806			
대양주	27 / 19	57	1,961	485			
중화권	48 / 25	61	10,489	8,774			

□ 기대효과

- 산업과 무역환경에서 가속화되는 온라인 방식과 이커머스 전환에 선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에 기여
- 오프라인 수출지원 사업의 대안뿐만 아니라 향후 온라인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

□ 사진자료



기업-해외바이어 간 수출 상담 현장

수범사례 8 구월3동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생활경제과)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

○ 인증대상 : 20가구 이상의 단독(공동)주택, 건물이 소재하는 일정 행정구역(마을)

○ 인증일자 : 2020년 1월 1일

○ 선정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선정결과

- 마 을 명 : 구월3동 에너지자립마을

- 설비용량 : 태양광 74개(222kW)

- 가 구 수 : 67가구

- 등 급 : 자립률 37%, 5등급(인천 최초)

• 연간 에너지 자립률 = <u>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u> × 100(%)

• 평가등급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에너지자립률	100%이상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 수범사항

- 에너지자립마을 인증에 따른 구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에너지 절감량 : 연간 286,068kWh 전력생산에 따른 40,050천원/년절감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수범사례 9 남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조성 (여성가족과)

□ 여성친화도시 지정 개요

- (추진목적)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성 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 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정일시 및 부처) 2020. 12. 30.(지정기간 : 5년) / 여성가족부 * 21개 지자체 선정(14개 지자체 신규지정, 7개 지자체 재지정)
- (심사개요)



□ 남동구의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

-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청년 창업지원센터' 내 여성 창업자 창업공간 제공
- 여성 기업인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해외 박람회·전시회 등 참가, 여성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및 우수 여성기업 육성 지원
- 생활밀착형 여성편의 'SOC 시설' 및 여성친화 공영주차장 조성
- 안전하고 행복한 남동형 '밤이 웃는 마을' 및 '함께 걷는 안전거리' 조성
- 공공시설의 신·개축 대상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성인지 관점을 반영 하기 위한 '공공시설 건축 가이드라인'제작
-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육아시설' 확충
- 여성친화 관점 반영한 '남동구형 뉴딜사업' 및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모든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 평생학습 프로그램' 구현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시설, 공원, 전통시장' 조성

수범사례 10 소통·협력의 사전예방적 지도점검 체계 구축 (보육정책과)

□ 추진배경

○ '정보공시의 날' 운영, 지도점검 사례집 발간,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소통. 협력의 先예방 보육행정으로 안심 보육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정보공시의 날'운영(전국최초)

- 일 시: 매월 첫번째주 수요일

- 참여대상: 관내 전체 어린이집

- 운영내용: 월별 중점 공시테마를 선정하여 자체점검 실시

- 운영방법: 자체점검표 작성·제출(어린이집 → 구) 및 공시 적정성 확인

○ 지도·점검 소통형 지도점검 사례집 발간(인천최초) : 2020. 9월

- 발간형태 : e-book 및 책자형

- 주요내용 : 7개 분야 27개 항목(재무회계, 보조금, 위생, 안전분야 등)

- 소요예산 : 1,400천원

○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 2020. 4월 ~ 12월

- 선정규모 : (당초)103개소 예상

- 선정시기 : 2020. 10월 중 (지정기간 : 2020.11.1. ~ 2021.10.31.)

- 선정조건 : 세부선정 기준에 의거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 이상

□ 주요성과 및 실적

○ '정보공시의 날'운영(전국최초)

- 2020. 6. 24. : 「정보공시의 날」운영계획 수립

- 2020. 7. 1. : 「정보공시의 날」 운영계획 및 「2020. 7월 정보공시의 날」 운영 통보 (구→어린이집)

- 정보공시의 날 운영실적 : 첫 시행(7월) 대비 정비완료비율 13.2% 상승(86.8→100%)

실시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비율	86.8%	97.9%	98.8%	98.8%	100%	100%

· 인천시 우수사례로 군·구 전파(인천시 → 각 군· 구) : 2020. 7. 1.

○ 지도·점검 소통형 지도점검 사례집 발간(인천최초)

- 사례집 발간 및 e-book 홈페이지 게시 : 2020. 9. 14.

- 사례집 배포(구 → 어린이집) : 2020. 9. 14.

○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 총 개소수 : 123개소 (2019년 40개소 → 2020년 123개소, 312%증가)

- · 가정 53, 국공립 36, 민간 31, 법인 1, 직장 2
- 관내 전체 어린이집 대시 선정비율 : 39.4% (※ '20.3월 관내 어린이집 312개소)

□ 기대효과

- 지도점검의 강화와 더불어 정보공시의 날 운영, 사례집 발간,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소통·협력의 사전예방적 지도점검체계 구축
 - ➡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는 보육환경 제공
- 정보공시의 날 운영, 사례집 발간을 통해 부모의 알권리 보장 및 동일 처분 누적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그에 따른 보육 공백을 사전 방지
- 열린어린이집의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에 개방성 및 정보 접근성을 높여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전적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토대 마련

□ 향후계획 및 관리방안

- ○「정보공시의 날」운영: 매월 첫번째주 수요일
- 어린이집 의견반영에 따른 e-book사례집 업데이트 및 게시·배포 : 2021. 9월
- 2021년 열린어린이집 선정 관리 : 2021. 4. ~ 2021. 11.

□ 관련자료

○ '정보공시의 날'운영(전국최초)



○ 지도·점검 소통형 지도점검 사례집 발간



수범사례 11 대형폐기물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운영 (청소행정과)

- ◇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판매 어려움으로 비대면 민워서비스 확대 운영
- ◇ 행정복지센터 스티커 판매 업무 효율 개선 및 배출신고자 개인정보유출 우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형폐기물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시행

○ 사업시기 : 2020. 10. 5일 부터

○ 설치대상 : 구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22개소(도림어울림센터 포함)

○ 운영방법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및 적정장소 설치

□ 주요성과

- 기존 배출 방식을 간소화 하여 민원불편 해소
 - 배출번호만 기재하여 배출 가능, 동 방문 없이 전화로 환불처리 가능
- 비대면 접수로 행정복지센터 업무 효율 제고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 효과

□ 향후계획

○ 주민 건의사항 반영하여 기능 개선 및 대단위 아파트 등 확대 운영 검토

□ 관련사진



수범사례 12 가로등 현수기 관리 (도시경관과)

□ 가로등 현수기 현황

(단위: 건, 조, 천원)

광고물	2018			2019			2020			비고
가로등	신고 건수	설치 수량	수수료	신고 건수	설치 수량	수수료	신고 건수	설치 수량	수수료	현수기
현수기	78	4,895	29,370	104	4,783	28,698	20	1,045	5,640	1조 = 2기

□ 문제점

- 저렴한 비용대비 높은 광고 효과로 현수기 광고 난립
- 게시기간 종료시에 맞춰 재신고 함으로써 일부 업체의 가로등 독점현상
- 신고 수량과 실제 설치 수량이 맞는지 확인이 어려움
- 신고기간 도과 후 실제 자진정비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대책

- 현수기 신고시 게시방법, 장소 및 게시기간 준수 안내
- 동일 공연에 대한 30일 이상 연장게시 금지
- 가로등 현수기 신고시 현수기에 직접 검인 날인, 수량 및 게시기간 실시간 확인
- 도로점용료 부과로 광고비용 현실화 및 남동구 세수 확보
- 표시방법 위반(설치장소 및 설치기가 등) 적발시 엄정한 과태료 부과

□ 추진사항

- 가로등 현수기 관리 계획 수립 : 2020. 2. 10.
- 현수기 표시방법 및 제한사항 업체 사전 안내 : 2020. 2. 7.
- 도로점용료 부과 사전 안내 : 2020. 2. 7.
- 현수기 검인 날인 시행 : 2020. 3. 1. 시행

- 가로등 현수기에 신고여부, 게시기간 검인 날인을 통한 광고물실명제 효과
- 도로 점용료 부과를 통해 저렴한 광고비용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게시 되는 가로등 현수기 난립문제 해소

수범사례 13 구청사 담당 허물기 사업 (공원녹지과)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구청 앞 도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매번 혼잡하여 통행이 불편하고 경관이 저해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 및 인근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하였음

□ 개선된 점

○ 구청 앞 도로를 폐지하고 청사 담장을 허물어 남동구청 ~ 담방마을근린 공원을 연계한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힐링 공간으로 조성



- 구민 모두가 편하게 드나들고 쉴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하여 권위적 이고 폐쇄적인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친근한 열린 공간 제공
- 남동구 청년예술인사업 푸를나이 JOB CON팀과 연계한 문화공연과 전시회 등을 통해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꽃과 함께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및 코로나블루 극복에 기여

수범사례 14 적극협상을 통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공원녹지과)

□ 수범사례 내용

- ◆ 산주와의 적극적 협상을 통해 남동구 만수동 산1-2번지 187,970㎡의 토지를 9.9억원에 매매계약 체결, 감정가(약115억원) 대비 약105억원 저렴하게 토지 구입
- ◆ 매입한 토지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21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무장애나눔길 공모사업에 지원/선정되어 10억원의 녹색자금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중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도시공원 등의 녹색복지사업이 신도시 위주로 투자되어 원도심과의 지역불균형 발생
- 기존 2개소의 녹색자금 지원사업(무장애나눔길)이 신도시(남동구 논현동, 서창2동)에 조성되는 등 원도심 공동화 현상 가속화

□ 개선된 점

- 원도심 산림복지 혜택부여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만수산 무 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기획하였으나 사유지가 많은 산림 내 무장애 나눔길 조성방법이 산림매입 방법밖에 없음(사유지 무상사용 협의 불가)
- 만수산 토지주(김○식, 만수동 산1-2, 187,970㎡)와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으로 감정평가 약 115억원의 토지를 9.9억원에 매매계약 체결, 약 105억원 예산절감

- 2021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지원사업(무장애나눔길)에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녹색자금 10억원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추진 중(무장애나눔길 2.6km)
- 원도심 교통약자를 위한 산림복지시설 설치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저렴한 예산으로 대규모 산림(187,970㎡) 매입, 다양한 산림복지사업(휴양림, 산림욕장,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등) 추진 가능
- 현재 區소유 임야(약20,000㎡)의 약10배(187,970㎡) 매입으로 미래 산림 사업에 선제적 대응력 확보
- 사유지 내 등산로 설치로 인한 각종 민원 해소

수범사례 15 간석3동 이면도로 교통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 교통행정과

□ 수범사례 내용

- 사 업 명 : 간석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 사업
- 사업기간 : 2020. 3. ~ 2020. 12.
- 사업구역 : 간석3동 내 도시계획도로(639,141㎡)
- 사업내용 : 간석3동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간석3동 이면도로 교통운영체계 개선계획'수립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원안가결)
- 사업목표
 - 간석3동 내부도로 차량소통 능력향상을 통한 긴급도로 기능회복
 - 간석3동 내부도로 자동차 주·정차공간 확보
 - 간석3동 내부도로 보행자 안전성 향상
- 주요개선계획
 - 일방통행 또는 양방통행 등의 통행방향 결정
 - 양방교행을 위한 양보구간 설치
 - 간선도로 진출입 정체 예방을 위한 부분적 중앙선 설치

□ 도로 통행방향별 개선계획

○ 주정차금지구역 및 중앙선 설치



당초 (편측 주차로 인한 교행어려움 및 간선도로 진출입 정체발생)



변경 (양방통행, 양방주정차금지구역, 중앙선 설치)

○ 양보구간 설치



당초 (양측 주차로 인한 교행어려움)



변경 (노상주차장 일부삭제 및 양보구간 설치)

○ 일방통행 지정 및 편측 주차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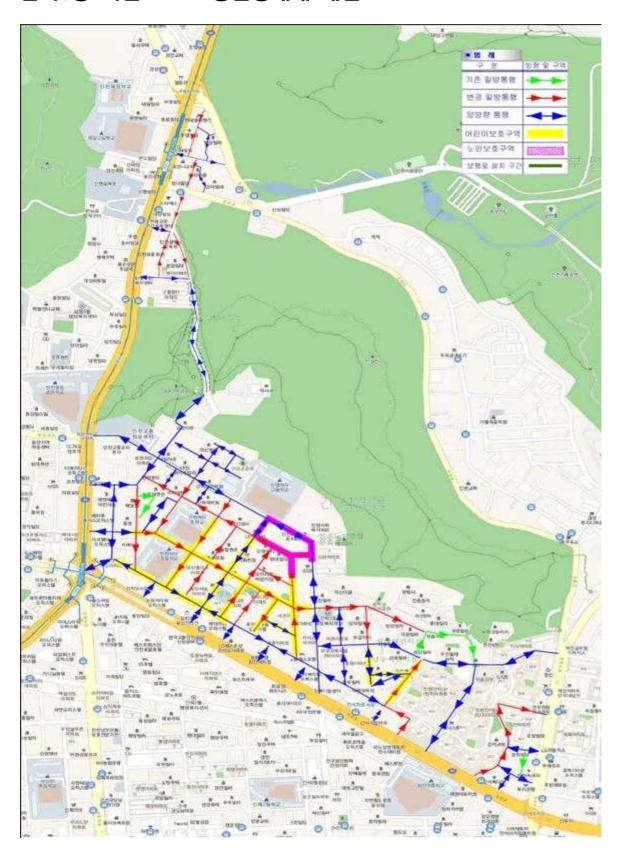


당초 (편측 주차로 인한 도로폭원 협소로 차량교행 어려움)



변경 (양방통행, 편측 백색실선, 보도)

□ 간석3동 이면도로 교통운영체계 개선도



수범사례 16 서창2 오수중계펌프 개선 사업 (방재하수과)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2019년 서창2지구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로 인하여 오수량이 증가하여 협착물로 인한 서창2 오수중계펌프장 펌프 막힘으로 인한 과부하 및 오수 역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 서창2지구 오수중계펌프장 설계 : 오수전용펌프 → 배수용펌프(실제시공)

□ 개선된 점

- 서창2 오수중계펌프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2018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0. 4.29. 오수/오물전용 펌프로 교체(1대 교체, 1대 예비펌프) 하여 오수역류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사업비 19,152천원 절감 및 공공운영비(전기세) 약 매년 7,620천원을 절감하여 구 재정 증대에 기여함 (1년 7,620천원 / 5년 38,100천원 / 10년 76,200천원)
 - 오수중계펌프 교체(1대) 및 예비펌프(1대) 확보에 따른 예산절감(19,152천원)
 - 펌프 교체 후 공공운영비(전기요금) 예산 절감(7,620천원/12개월)
 - ※ 절감액 = 펌프 교체 전 전기요금 납부 금액 교체 후 전기요금 납부 금액
 - ※ 절감률 = 10개월 기준 연 242% 절감(설치 전 10,816천원 / 설치 후 4,468천원)

- 한국주택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서창2오수중계펌프장 시설 개선으로 시설비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으로 구 재정 증대에 기여
- 서창2지구의 현재 입지 현황에 맞는 펌프시설을 구축하여 오수 역류를 민원 해결 및 유지관리 편의 향상

수범사례 17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방재하수과)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85호) 및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 일부가 현실화 되지 않아 사업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현장 민원사항을 시 하수과에 건의하였으며, 시 하수과에서는 우리구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민원해소 및 현실화 차원 에서 2020.7.15.(시하수과-7262호)자로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 개선(안)"을 통보하였음
- 인천만수역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2020.7.3.)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빗물유출부담금)과 관련하여 시 하수과에서 변경 통보한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 개선(안)"의 적용 시점에 대한 조합과의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명확한 적용을 통하여 민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인천시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함

□ 개선된 점

○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 빗물부담금 적용시점(산정기준일)에 대해서 "빗물 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 개선(안)"을 적용하여 확정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빗물부담금을 재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용한 명확한 법리 해석 및 소통하는 행정 처리로 조합과의 이견사항을 사전에 방지 및 적극 행정을 추진함

□ 기대효과

○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부담금 완화에 크게 기여함
 ※ 원인자부담금 부과 개선(인천만수역 지역주택조합 남광하우스토리)
 [당초금액(1634백만원) → 개선금액(844백만원), 감액(789백만원)]

수범사례 18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치충전소 행위허가기준 고시 시행 도시째생과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2018. 2월)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하게 되었으나, 허가 시 입지 및 건축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재량에 의해 판단하고 불가 처분할 경우 재량권 남용의 소지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함
- 부대시설로 가능하도록 한 세차시설에 대하여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해도 세차장 확장에 대해 조율할 규정 없으며, 실제로 전기차 충전소의 세차장 주사용 사례가 타 시(고양시)에서 조사되었음
- 전기차 충전소만으로는 운영상 수지가 맞지 않아 세차장에 주목적을 두고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국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허가를 해야 함

□ 개선된 점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하는 용도에 대하여 타당하고 보편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허가하기 위하여 2021. 1. 4.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기준을 고시
 - ⇒ 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 및 질서유지, 구민 편익 도모

- 관내 전기차 충전소 효과적 조율로,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개발 방 지 및 전기차 사용 주민의 편익 함께 충족
 - * 충전소의 세차장화 방지를 위해, 충전 대수에 비례한 세차장 설치기준 병행
- 충전소 허가 기준을 명백히 설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지 최소화

수범사례 19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건축과)

□ 추진배경

- 소규모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소방시설법』의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예기치 않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여 구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사항

- 2020. 01. 16.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0. 01. ~ 04.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 2020. 07. 10. ~ 07. 14.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서면심의(1차)
- 2020. 07. 30. : 간석동 773-7번지 외 3개소 완강기 설치
- 2020. 11. 12. ~ 11. 18.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서면심의(2차)
- 2020. 12. 17. : 장수동 780-2번지 외 8개소 완강기 설치

□ 추진결과 및 효과

-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피난구조설비(완강기)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구민의 안전 및 생명 보호에 기여
 - 피난구조설비(완강기) 13개소 설치 완료(3,250천원)

구분	피난구조설비 설치 개소	지출금액
1차 설치	4개소(간석동 773-7번지 외 3개소)	1,000천원
2차 설치	9개소(장수동 780-2번지 외 8개소)	2,250천원

※ 2021. 7월 :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사업 추경예산 반영(예정)

□ 관련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참고자료

보도자료

매일일보

인천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에 대피용 완강기 설치 추진

3층 이상,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소규모 주택 대상, 올 3월 신청 접수



이처 난동구청 전경

[매일일보 김앙훈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올해부터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 한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난층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구는 지난해 인강기 설치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인 '남동구 화재안전취익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 레'를 제정하고 설치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 원을 올해예산에 반영했다.

완강기 설치 지원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과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남동구는 3월 중 신청을 받아 올해 약 50여 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간투데이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L02면 지역

남동구, '소규모 주택 완강기 설치' 본격 추진

우용난 기자 wood0808@dtoday.co.kr

인천시 납동구는 인천 회초로 실시 하는 '소규모 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의 대삼자들 모집한다고 30일 밝

원강기는 10층 이하 건물에서 화재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몸에 벨트롭 매 고 내려올 수 있게 한 비상용 피난기 구이다.

다. 비상상황시 초기 탈출을 돕는 장비 이지만 연행법상 소규모 주택 등은 설 치 대상에 제외돼 인명피해 발생 우리 가 높은 실적이다.

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화재사고 1499건 가운데 413건 (27.5%)이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 했으며 주택 회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

했으며 구력 화재도 인한 사람사는 전 체의 약 57%에 달했다. 이에 구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등 일반 주택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8 일단 구의 전공 회에를 지기 위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결정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인원 최초로 '난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 비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비 용 천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57% 설치비 1000만원 예산 반영 3층이상 85㎡ 이하 주택 대상 연내 36가구 추가설치 예정

음에 1월부터 행정목지센터 등을 등해 해당 사업을 홍보해 최근 화재 안전 취약주백 4가구에 완강기를 설 첫했으며 연내 36가구에 추가 설 참 계획이다. 완강기 설치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1910명 후보 사람이 소리가 존해야.

전용면적 85㎡ 이하이 소규모 주택(단 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백 등) 이다. 구는 소방과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

성된 '남동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설치비의 10%만 부

답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지원한다. 구는 완강기 설치와 함께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지속적으로 완 강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설치를 홍보



합 방침이다

할 반원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거국하는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 물 지원하는 것은 시고를 미던에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사각지대 없 이 구민 모두가 병복할 권리를 누리는 안전 남동 구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었으면 사람들 기본에 가장되었다. 한걸음 앞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블로그 홍보자료





수범사례 20 소규모 공동주택 시니어 안전점검 모니터링단 (공동주택과)

□ 사업의 필요성

-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필요
- 전문성(자격증)보유 시니어 인력 활용
-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20. 09월 ~

□ 사업대상 :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111개 단지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구조,소방,전기,가스 등] 노후·불량 안전취약부 현장점검 및 컨설팅(예방 홍보활동 포함)
- 상반기(해빙기, 장마대비) 점검, 하반기(태풍, 동절기대비) 점검으로 지속 적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및 대책마련을 통해 주민안전에 기여
- 관리주체 또는 자치회 정보파악을 통해 관리 및 안전업무에 도움

□ 모니터링단 구성

구분	<u>څ</u>	흥원	주택관리사	방화관리자	소방안전	가스안전	기타
A조		5	1	1	1	1	1
B조	20	5	1	1	1	1	1
C조	20	5	1	1	1	1	1
D조		5	1	1	1	1	1

○ 활동시간 : 주15시간(3시간/1일), 월 60시간 미만, 월 1회 휴무

○ 활동급여 : 월 최대 712,800원(주휴수당 포함), 조장수당 50,000원